INVENTION & PATENT

2012 November

11

[Focus]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강남스타일
상표 등록은?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을
고려한 인적보안
(Personal Security)

발명특허

INVENTION & PATENT _ Vol . 436

한국발명진흥회

Contents

Column

6 근심이 없을 때 미리 준비하자

8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강남스타일, 상표 등록은?’

Report

12 특허분쟁 이원화 구조 관점에서 살펴본 대법원 판결

16 최근 미국과 일본의 판례를 통해 살펴본 ‘제법한정 청구항’의 해석론에 관한 고찰

26 영업비밀보호와 인적보안(Personal Security)

30 특허동향분석 보고서, 보다 쉽고 빠르게 작성해보자!

36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일본) 심결취소 판례 소개

Information

40 **세계는 지금** 세계 지식재산권 동향 소식

45 여기서 잠깐 _ 특허 Q&A

46 KIPO NEWS 특허청 소식

51 **여기서 잠깐 _ 독자마당**

52 KIPA NEWS 한국발명진흥회 행사 및 소식

56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된 우리나라 대표 특산품**

58 **발명만화** 몰래발명이야기 – 라식수술

60 **건강하게 삽시다** 오래 살려면 뇌도 단련시켜야 한다

63 **여기서 잠깐 _ 문화산책**

Invention & Patent
November 2012 Vol. 436

발행일 2012년 11월호 제37권 제11호(통권436호) **발행처** 한국발명진흥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_ 우135-980) 02)3459-2800(代)
발행인/편집인 김 광 림 **인쇄인** 이평원 **인쇄처** 휘문인쇄사 (02)2276-1234 **인쇄** 2012년 11월 8일 **발행** 2012년 11월 11일
한국발명진흥회 회지 월간 발명특허
•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위의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게재된 기사는 본회의 견해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12년 전국교원 발명교육연구대회 안내문

■ 목적

- 발명교육 현장에서의 교수 · 학습이나 교육행정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한 문제 개선 · 해결, 일반화 및 교원의 연구능력 제고

본 대회는「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9조 제1항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국 규모연구대회로서,「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연구실적평정시 가점 (1등급, 2등급, 3등급)이 부여됨

■ 추진 기관

- 주 최 / 주 관 : 특허청 / 한국발명진흥회
- 후 원 : 교육과학기술부

■ 참가 대상 : 전국 초 · 중 · 고등학교 재직 교원

■ 참가 분야 (연구영역)

구 분	영역 1 (발명교육 일반논문분야)	영역 2 (발명대회 지도사례 분야)
주요내용 (예시)	• 발명교육 교수 · 학습 방법 개발 및 활용 • 발명교실운영을 위한 발명교육 실천 사례 • 발명영재교육의 활성화 방안 • 타 영역과 융합한 발명교육 지도방안 • 발명동아리 운영 및 지도사례 • 발명(지재권)교육 정책방향 소고 등	•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지도사례 • 대한민국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 지도사례 • 기타 특허청 주최 발명 · 창의성대회 지도사례

※ 2개 분야(영역1, 2)의 동시 출품은 불허함.

■ 제출 마감일 : 2012. 11. 23(금) 18:00(우편접수 : 마감시한 도착분까지 유효)

★ 세부 공지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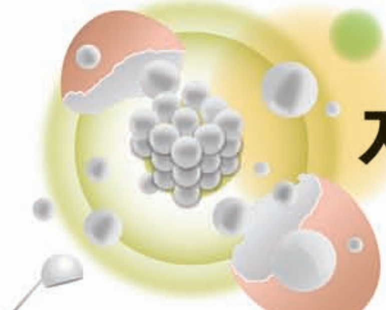

지식재산캠퍼스 11월 교육일정 안내

교육일정

주요국(IP5) 지식재산권 비교 실무 2기 일정:11/7(수) ~ 11/9(금)

- 지식재산 주요5국(한·중·미·일·EPO) 의 지식재산권법 비교를 통한 출원절차 및 권리구제절차의 큰 흐름 총정리

교육비	환급 및 지원
55만원(48만원)	노동부 환급

지식재산권기초 4기 일정:11/14(수) ~ 11/16(금)

- 지식재산 초보자를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제도 및 실무 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확립

교육비	환급 및 지원
55만원(48만원)	노동부 환급

특허소송 실무 및 최신판례 동향 일정:11/22(목) ~ 11/23(금)

- 특허 소송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소송준비 절차 및 소송 유의사항 파악
- 특허, 상표, 디자인 관련 최신 판례 동향 파악 및 유명 사건 분석

교육비	환급 및 지원
1일당 18만원(15만원) 2일 패키지할인 30만원(24만원)	변리사 의무연수 10시간 인정

수강신청 방법

홈페이지 접속	과정선택	수강대상 확인	수강정보 입력	훈련위탁계약서출력	훈련위탁계약서 발송
www.ipcampus.kr	과정 및 일정 확인	환급대상 확인 후 신청 (노동부/ 비환급)	회사,교육생,계산서 담당자 정보 입력	직인처리	fax.02-3459-2789

교육비 환급방법

노동부

노동부 교육비 환급
대상 : 고용보험가입자

✔ 우선지원대상기업 약20%

대기업 약15% 환급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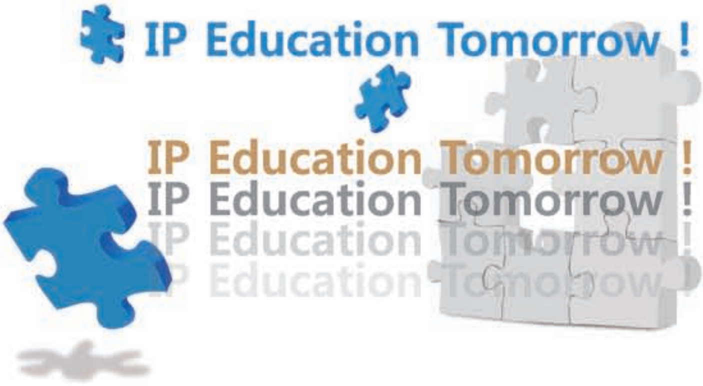

자세한 사항은 www.ipcampus.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PCAMPUS
지 식 재 산 캠 퍼 스

2012 지식재산캠퍼스 연간 교육일정

지재권 일반과정

특허청 80%지원, 노동부 약 15%환급

NO	일자	강좌명
1	02.08 ~ 02.10	지식재산권 기초 1기
2	02.15 ~ 02.17	디자인-저작권 이해 및 실무 1기
3	02.22 ~ 02.24	특허청구범위 해석과 침패판단 1기
4	03.14 ~ 03.16	특허정보검색 및 특허성 판단 1기
5	03.21 ~ 03.23	특허명세서 작성 및 리뷰 SKILL UP 1기
6	03.28 ~ 03.30	특허평가 및 라이센싱 계약 1기
7	04.04 ~ 04.06	강한 상표를 위한 브랜딩 전략 1기
8	04.25 ~ 04.27	주요국(IP5) 지식재산권 비교 실무 1기
9	05.09 ~ 05.11	지식재산권 기초 2기
10	05.23 ~ 05.25	중국특허 마스터 과정(출원~소송)
11	06.05 ~ 06.08	디자인・저작권 이해 및 실무 2기
12	06.13 ~ 06.15	지식재산 번역(한-중)
13	06.20 ~ 06.22	미국특허 마스터 과정(출원OA)
14	08.22 ~ 08.24	지식재산권 기초 3기
15	08.29 ~ 08.31	특허정보검색 및 특허성 판단 2기
16	09.05 ~ 09.07	특허청구범위 해석과 침해판단 2기
17	09.12 ~ 09.14	지식재산 번역(한-미) 2기
18	09.19 ~ 09.21	특허평가 및 라이센싱 계약 2기
19	09.26 ~ 09.28	특허명세서 작성 및 리뷰 SKILL UP 2기
20	10.10 ~ 10.12	강한 상표를 위한 브랜딩 전략 2기
21	10.24 ~ 10.26	유럽특허 마스터 과정(출원~소송)
22	10.31 ~ 11.02	미국특허 마스터 과정(분쟁소송)
23	11.07 ~ 11.09	주요국(IP5) 지식재산권 비교 실무 2기
24	11.14 ~ 11.16	지식재산권 기초 4기

지재권 특별과정

특허청 80%지원

NO	일자	강좌명
1	02.28	한-미,한-EU FTA 이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2	04.17	수출입시 꼭 고려해야 할 지식재산 실무
3	04.19	Patent Troll 대응 및 단계별 특허분쟁 대응요령
4	05.03	특허침해 감정서 작성 및 손해액 산정
5	05.29	직무발명 제도 및 직무발명 보상평가
6	06.26	영업비밀 관리 및 부정경쟁 방지 실무
7	06.28	특허 소송시 변론능력 SKILL UP
8	09.25	연구노트와 발명신고서 작성법
9	10.02	단계별 특허비용 및 기일 관리전략
10	10.05	영문 지재권 용어 및 영문레터 작성 노하우
11	10.17	심사관과 함께하는 명세서 클리닉
12	11.22	특허소송 실무 및 최신 판례 동향 1
13	11.23	특허소송 실무 및 최신 판례 동향 2

지재권 국제과정

NO	일자	강좌명
1	03.08 ~ 05.22	PADIAS* (해외강사 국내초청 강의)
2	7월 중	지식재산 실크로드_EUROPE (해외연수)

- 상기 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노동부(고용보험 가입대상자):교육비의 약 15% 환급
  특허청(중소기업 대상):교육비의 80% 환급
- 특허청 예산 소진시 교육비 지원 조기마감 가능
- 환급중복 지원 불가, 특허청 지원 대상자 회원사 할인 제외

* PADIAS : Patent Application Drafting and Infringement Avoidance Strategies (미국 특허출원서 작성 및 침해회피 전략)실무 과정

오시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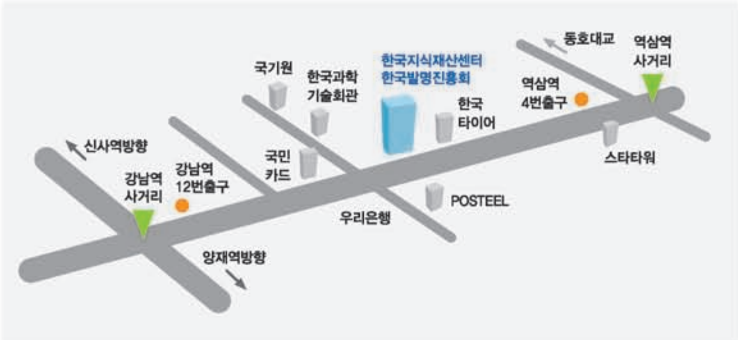

교육장 안내

▲ 제1교육장

▲ 제2교육장

▲ 교육생 휴게실

IPCAMPUS 지식재산캠퍼스
전 화 (02)3459-2781,2782 팩 스 (02)3459-2789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보일러

잦은 고장에서 발생한 오기

초등학교도 채 마치지 못하고, 마흔이 넘어서까지 제재소를 운영해온 일본의 다구마는 숲 속에서 제재할 때 사용하는 증기기관을 수없이 수리해야 했다.

증기기관은 보일러에서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기관을 움직이게 하는 것인데, 보일러의 고장이 잦아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었다.

'아휴, 차라리 내가 만들고 말지…….'

보일러의 고장 때문에 화가 난 다구마는 연구를 결심했으나 이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많은 빚 때문에 절망감에 차 있던 그는 스스로를 보일러라고 생각하며 정리를 시작했다.

'파이프 속의 김은 어떻게 움질일까?'

결국 그는 바깥쪽에는 상승용, 안쪽에는 하강용의 이중 파이프를 교안하여 당시 세계 최고의 보일러를 발명하게 된다.

영사기

경마광의 노력이 낳은
극장문화의 시작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를 볼수 있는 것은 영사기의 발명 덕분이다. 영화필름을 영사하는 영사기는 미국의 존 긴스와 프랑스의 뤼미에르 형제가 처음 발명했다. 하지만 이들의 발명이 이루어지게 된 데는 에드워드 마이브리즈(Eadweard Mybridge, 1830~1904)라는 한 경마광의 노력이 따랐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72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던 경마광 마이브리즈는 친구 스탠포드와 함께 말이 달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기로 했다.

그리고 경마장 안에 24대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움직이는 말(The Horse in Motion)'을 찍었다.

첫 촬영 작업에 성공한 마이브리즈는 연구를 거듭한 결과 1초 동안에 82매의 사진을 찍는데 성공했다. 그의 연속촬영이 성공하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사진'을 발명하기 위한 연구를 사작하게 되었고, 이는 영사기의 발명으로 이어졌다.

▲ 움직이는 말(1872)

Column

근심이 없을 때 미리 준비하자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강남스타일, 상표 등록은?'

근심이 없을 때 미리 준비하자

어떤 나라에 명철한 임금이 있었다.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어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라 방심하고 있을 때 그 임금은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달랐다.

근심이 없을 때 미리 경계했고, 난이 일어나지 않을 때 미리 대비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많은 신하들은 그런 임금이 못마땅했다. 왜 이런 좋은 시절, 잘 나가고 있는 이때에 그런 준비라는 난리를 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잘 다스려지는 나라라 할지라도 반드시 난리가 일어날 여지가 있고, 외적이 침입할 여지가 있는 법. 그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죽을 것인가? 항복할 것인가?

지금 지식재산권이라는 보이지 않는 권리를 가지고 연일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삼성과 애플의 싸움 같은 거대진영의 세계전이 있는가 하면, 중소기업과 개인들이 싸움을 펼치는 국지전도 있다.

날이 지날수록 신문과 매스컴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처절한 싸움들이 보도되며 기업들의 희비 쌍곡선이 교차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중원을 지배하기 위해 치고받았던 춘추전국시대를 떠오르게 한다. 손자는 그 싸움들을 보면서 싸움의 기술서인 손자병법을 기술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 CEO들이여! 하나만 물어봅시다.

당신들은 지금 이 작금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는가?

지금 당신들의 회사는 별다른 공격을 받지 않고 잘 지내고 있어 행복한가? 당신들이 월급 주고 있는 직원들은 당신 회사를 지켜내기 위해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회사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고 보는가?

CEO들이여!

만약 당신 회사와 직원들은 그대로 나 두고 당신만 그 회사에서 쫓겨나서, CEO만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면 당신의 심정은 어떠할 것 같은가?

춘추전국시대의 나라들은 서로 먹고 먹히는 싸움들을 벌였지만, 상대국을 멸망의 대상으로 초토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단지 자신이 그 상대국의 패권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상대국 영토나 백성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지 않으며 싸움에서 이기려고 했다. 그래서 싸움 중에 최상의 싸움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고 했다. 싸울 때는 적군이지만 내가 승리하고 나면 그들 또한 내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다.

지금 펼쳐지고 있는 지식재산전쟁도 같은 양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당신의 회사를 공격할 때 목표는 당신 CEO이지 결코 당신 회사의 폐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신 회사 직원들을 내쫓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당신만 노린다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어찌할 것인가?

지금 평온하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미리 준비할 것인가?

지난 일요일 예배시간에 장경동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 가슴에 남는 내용이 있어 옮겨본다.

"오늘 내가 받는 고통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며, 오늘 내가 누리는 행복은 언젠가 내가 잘 보낸 시간의 보상이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최선의 싸움은 지금, 바로 지금, 평온할 때, 어려울 때 준비하며 대비하는 것이리라. 연단의 오늘이 없다면 환희의 내일을 기대하지 말지니, 지금 당신 회사의 울타리들을 더 견고히 만들고 준비하자. 비바람 칠 그날을 생각하면서.

지식재산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주도권을 잡는 것이다. 끌려다닐 것인가? 끌고나갈 것인가? 소송에 휩싸이면 너무 힘들다. 지치고 피곤해진다. 준비하지 않으면 끌려다녀야 한다.

축구경기에서도 주도권을 쥐고 있는 팀은 체력이 덜 소모된다. 공격할 때와 수비할 때 누가 더 힘이 빠질 것 같은가? 결국, 경기의 속도 조절은 공격자가 하는 것이지 수비수가 하는 것이 아니다. 끌려다니는 경기를 한 팀은 일찍 지쳐서 게임을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문하는데, 끌려다니지 말고 끌고 다니려면, 수비하지 않고 공격하려면 지금 준비하고 투자하라. 산업재산권으로 준비하지 않는 기업의 성패는 명약관화하다. 준비가 없다면 언젠가 끌려다니다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근심이 없을 때 미리 준비했던 명철한 임금에게서 오늘 한 수 배워 행복이라는 미래를 보상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빌어본다. 2012. 11

이 승 종 심판관
특허청 특허심판원

Column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강남스타일, 상표 등록은?'

지리적 명칭이 결합된 상표의 등록 여부

요즘 대세가 누구인지 물어본다면 단연코 '싸이'를 얘기할 것이다. 싸이는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로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고,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로 이제 '강남'은 한국의 '핫플레이스'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강남스타일'은 여기 저기에서 패러디하여 누군가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발하게 응용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강남스타일'에 대한 상표 출원 역시 '강남스타일' 노래가 나온 이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8월 이후로 계속해서 출원이 되었고, 현재까지 30여 건 정도가 출원되었다. 상품 분야는 완구류, 내려받기 가능한 프로그램, 커피, 냉장고, 에어컨, 소파, 침대 등 다양한 분야에 모두 출원이 되었으며, 출원 이후 3개월 밖에 안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심사 계류 중이라 등록 여부를 알 수가 없다.

'강남스타일'의 상표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서울시에 있는 '강남구' 행정지역의 지리적 명칭을 일컫는 '강남'과 '복식이나 머리 따위의 모양, 일정한 방식 등'을 뜻하는 식별력이 약한 '스타일'이라는 용어가 결합되어 있다. '강남스타일'에서 '스타일'은 식별력이 극히 약한 부분이라 이 부분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강남' 역시 상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된

다면 '강남스타일' 은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부족하여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강남스타일' 의 상표 출원 현황〉

1	강남스타일	4020120060563 (2012.09.25)	출원	34
2	[illegible]	4020120060576 (2012.09.26)	출원	28
3	오빤 강남스타일	4020120060342 (2012.09.25)	출원	10
4	강남스타일	4020120059952 (2012.09.21)	출원	09
5	강남스타일 kangnamstyle	4020120059141 (2012.09.19)	출원	16 12 18 07
6	강남스타일	4020120059953 (2012.09.21)	출원	12
7	커피믹스 강남스타일 Coffee Mix GANGNAM STYLE	4020120058111 (2012.09.15)	출원	30

우리나라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표심사기준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구체적인 적용요건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저한 지리적 명칭' 의 범위를 국가명, 국내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명칭, 특별시·광역시·도의 시·군·구의 명칭, 저명한 외국의 수도명, 대도시명, 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행정구역의 명칭 그리고 현저하게 알려진 국내외의 고적지, 관광지, 번화가 등의 명칭 등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사례들 중 상표 '뉴욕', '북경오리', 'MANHATTAN', 'HALLA(한라)', '장충동왕족발', 종로학원 등은 모두 본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심사기준에 따르면 강남구는 서울특별시의 '강남구' 의 명칭에 해당되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 에 속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것이다.

상기 상표심사기준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시, 도의 시, 군, 구의 명칭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나 각 구에 위치한 '동' 의 명칭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취급할 것인지 문제되는데, 이는 그 '동' 의 명칭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현저한 지리적 명칭' 으로 볼 수 있을 지 여부를 판단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강남구' 에 속하는 '동' 에는 '역삼동, 개포동,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신사동, 논현동, 압구정동, 세곡동, 자곡동, 유련동, 일원동, 수서동, 도곡동' 이 있는데, 이 중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동의 이름이 있으나(예: 압구정동, 삼성동, 대치동 등), 같은 강남구에 있더라도 유명하지 않은 동의 이름도 있다(예: 자곡동, 유련동 등). 실제로 이들 동의 이름을 포함한 상표 출원의 등록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압구정' 을 포함하는 상표 출원 현황〉

28	압구정 [illegible]	4120100003114 (2010.02.05)	거절	43
29	압구정금성	4120100001721 (2010.01.21)	거절	43
30	[illegible]	4120090009542 (2009.05.06)	거절	43
31	닭갈비	4120090000023 (2009.01.02)	거절	43
32	압구정 볶는 커피	4120080031259 (2008.12.10)	거절	43

〈'압구정'을 포함하는 상표 출원 현황〉

33	압구정 볶는커피	4120080031258 (2008.12.10)	거절	43
34	압구정 볶는 커피	4120080031257 (2008.12.10)	거절	43
35	압구정 커피	4120080013557 (2008.05.21)	거절	43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구정'을 포함하는 상표들은 대부분 거절되었으며, 그 이유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즉,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표 등록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구정'을 포함하는 상표는 80여 건이 출원되었다. 이는 '압구정'이는 명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들이 사는 동네라는 인식이 강해 이를 상표명이나 서비스명칭으로 쓰게 되면 '고급'이나 '럭셔리' 브랜드의 이미지를 갖게 돼 이러한 브랜드 이미지를 고수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이름이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강남구에서 그 인지도가 다소 떨어지는 동의 명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되었을까? 하기의 그림은 강남구에 위치한 '율현동'의 명칭을 포함하는 상표들인데 총 3건 출원됐었으며, 3건 모두 공고되거나 등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율현동'은 지리적 명칭이기는 하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상표 등록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율현'을 포함하는 상표 등록 현황〉

☐	1	律賢	4120050020818 (2005.09.09)	4120060028427 (2006.05.03)	4101363110000 (2006.08.21)	등록	42
☐	2	율 현	4120050020817 (2005.09.09)	4120060028426 (2006.05.03)	4101363100000 (2006.08.21)	등록	42
☐	3	율현 엔지니어링	4119940002724 (1994.04.07)	4119950017219 (1995.06.19)		공고	104

이와 같이 지리적 명칭을 포함하는 상표를 등록 받고자 할 때에는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지리적 명칭이 '현저하게 알려져 있는 지 여부'를 따져 보아 출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디까지나 상표 출원을 한다는 것은 그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자 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 명칭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라면, 독점적인 사용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상표 출원을 할 필요가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지리적 명칭을 포함하는 상표의 등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전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인지도 여부를 살펴본 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상표 출원의 방향을 정해나갈 필요가 있다. 2012. 11

전 소 정
知心 IP&Company 상표팀 변리사

Report

특허분쟁 이원화 구조 관점에서 살펴본 대법원 판결

최근 미국과 일본의 판례를 통해 살펴본
'제법한정 청구항' 의 해석론에 관한 고찰

영업비밀보호와 인적보안(Personal Security)

특허동향분석 보고서, 보다 쉽고 빠르게 작성해보자!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일본) 심결취소 판례 소개

특허분쟁 이원화 구조 관점에서 살펴본 대법원 판결
(2010다95390)

침해소송 중 권리남용 이론 적용에 대한 개선안

무효의 항변 도입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권리남용이론은 권리 자체에 하자는 없지만 권리행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일반규정으로 돌아가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침해소송 중의 권리남용 이론의 적용은 그 이론 구성상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경우, 소위 킬비 사건 이후에 특허무효의 항변을 신설한 바 있다. 일본 특허법 제104조의 3 제1항에서, “당해 특허가 특허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특허권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권리남용 이론 보다는 한층 이론상 보강된 규정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권리남용 이론을 적용하여 침해소송에서 진보성을 판단하기 보다는 특허 무효의 항변 규정을 신설하거나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권리남용 항변사유 범위의 제한

신규성 범위로 제한

특허 무효의 항변을 도입한다고 할지라도, 권리남용 이론과 특허무효의 항변의 적용은 실무적으로 그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 이론의 명칭에 관계없이 명백하게 특허의 유효성이 없는 경우, 즉 신규성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일반민사법원이 특허의 유효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진보성 판단은 그 기준 자체가 모호할 수 있으며, 2차적 고려요소까지 생각한다면 그 결론이 심급마다 서로 달라질 수도 있다. 법원이 권리남용의 항변에서 진보성을 판단한 결과 심급마다 그 결론이 상이하다면 소송 당사자의 입장에서 판결을 신뢰하지 않고 이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것을 도모할 것이다. 대상 판결에서도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진보성 판단이 서로 상이하여 당사자에게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민사법원이 본래의 기능과 역할로 돌아가기 위하여 명백한 하자로 판단되는 신규성에 대하여만 관여하고,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전문성을 구비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특허분쟁해결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될 것이다.

특허분쟁절차의 합리적 운용

소송절차 중지제도의 활용

소송절차 중에 무효심판이 제기되는 경우, 무효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그 결과에 기반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소송절차의 중지는 재량사항이지만, 소송절차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경우 소송절차의 중지제도를 활용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설령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일반민사법원에서 진보성 판단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소송 절차를 중지시키고 특허심판원 또는 특허법원 판단을 존중하여 그 결과를 참조해야 할 것이다.

무효심판 심리기간의 법제화

소송절차의 중지제도를 활용한다고 해도, 무효심판의 심리기간이 장기화된다면 소송절차의 중지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분쟁의 1회적 해결 및 소송경제의 관점에서 무효심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효심판의 심리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9]. 무효심판 심리기간의 법제화를 통해 소송절차가 중지된 사건과 관련된 무효심판은 최우선적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그 심결까지 단기간에 해결한다면 당사자의 이익에도 부합하게 될 것이다.

무효 항변의 실기 각하

일본 특허법 제104조의 3 제2항은 “특허무효의 항변에 의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하여는 이것이 심리를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목적으로 하여 제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재판소는 신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각하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참고하면, 소송절차에서 권리남용의 이론이나 무효의 항변이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항변은 1심 법원에서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진보성과 같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무효심판의 제기도 시기상 제약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이 일방 당사자의 이익을 해친다기 보다는 오히려 소송 양당사자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

9) 다케다 가즈히코 저, 김관식 외 3인 역, 특허의 지식, 도서출판 에이제이디자인기획, 357면 참조

민사 2심 법원의 종합적 판단

무효심결과 1심법원 판결의 종합적 판단

위와 같은 특허분쟁절차의 합리적 운용에 기반하여, 민사 2심법원에서 특허무효심판의 심결과 민사 1심법원의 판결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이를 참조하여 판단한다면 당사자가 판결을 신뢰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현재 특허분쟁절차가 이원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해도, 민사 1심법원이 특허의 유효성에 대하여 판단하여 소송경제를 해치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민사 2심법원이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을 참조한다면 분쟁의 1회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법원의 심리제한설 도입

위와 같이,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 심결을 일반민사법원에서 참고하기 위해서는 특허법원에서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특허법원에서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 일반민사법원에서 이를 참고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특허법원은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는 무제한설을 따르고 있다[10]. 이러한 무제한설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인 특허법원이 하급심격인 특허심판원에서 판단하지 않은 사안을 최초로 판단하여 고등법원이 아닌 1심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스스로 그 지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다[11].

따라서 특허법원의 심리무제한설을 폐기하고 심리제한설을 도입해, 무효심판청구인이 특허심판원에서 관련 선행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소송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민사법원이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존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법원의 관할 집중

특허분쟁절차의 이원화 구조에 대한 혁신

특허분쟁절차를 위와 같이 효율적으로 운용한다고 할지라도, 특허분쟁절차의 이원화 구조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허분쟁절차의 이원화 구조에 의한 피해자는 소송 당사자, 즉 산업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책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진보성 판단을 전문기관에서 진행하고, 이에 기초하여 특허침해판단을 할 수 있도록 특허법원에 관할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보성 등의 판단 전문성 제고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과 같이 특허법원에 특허사건에 대한 관할을 집중한다면 법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진보성 등의 판단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 특허법원의 관할 집중은 특허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과학계 및 산업계의 지지를 받는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

공동소송대리

권리남용에 의한 진보성 판단의 논란은 법원이 진보성을 판단할 만큼 민사소송의 소송 관계자가 전문성을 확보하였는지로 귀결된다. 민사소송은 직권주의가 아닌 당사자주의이므로, 대리인이 특허발명의 유효성을

1심부터 전문적인 의견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행 실무는 민사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변리사와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고 변호사는 특허발명의 유효성을 전문적으로 대리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함과 동시에 특허 유효성 판단결과가 심급마다 또는 사건마다 달리 판단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인정하는 것도 특허소송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특허분쟁 절차의 이원화 구조의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하겠다.

또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제도를 마련하고 추후에 특허법원의 관할 집중까지 이루어진다면, 소송당자자인 과학계와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특허분쟁시스템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결 론

이 사건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침해소송 중의 권리남용의 항변에 대한 진보성 판단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민사법원이 침해소송에서 진보성 판단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고 해석된다.

또한 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에서 상반된 판결을 양산할 수 있는 확률을 높였다고 평가되며, 현재의 특허분쟁 이원화 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특허분쟁 이원화 구조의 심화는 소송당사자, 즉 산업계 및 과학계의 이익을 심하게 해칠 수 있다. 특허분쟁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특허경영을 달성하려는 기업 등에게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기는 커녕, 기업의 혼란만 야기시키는 특허분쟁 환경을 조장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특허분쟁 시스템에서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민사법원이 독자적으로 진보성을 판단하기 보다는 특허심판원 또는 특허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도록 합리적인 제도적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특허법원의 관할집중 및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인정함으로써, 특허분쟁 이원화 시스템을 혁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2. 11

김 태 수 변리사/책임연구원
(주)삼성전자 반도체 IP출원그룹

10)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306 판결
11) 특허청, 미국 특허심판원 및 연방순회항소법원 연구, 2007년, 105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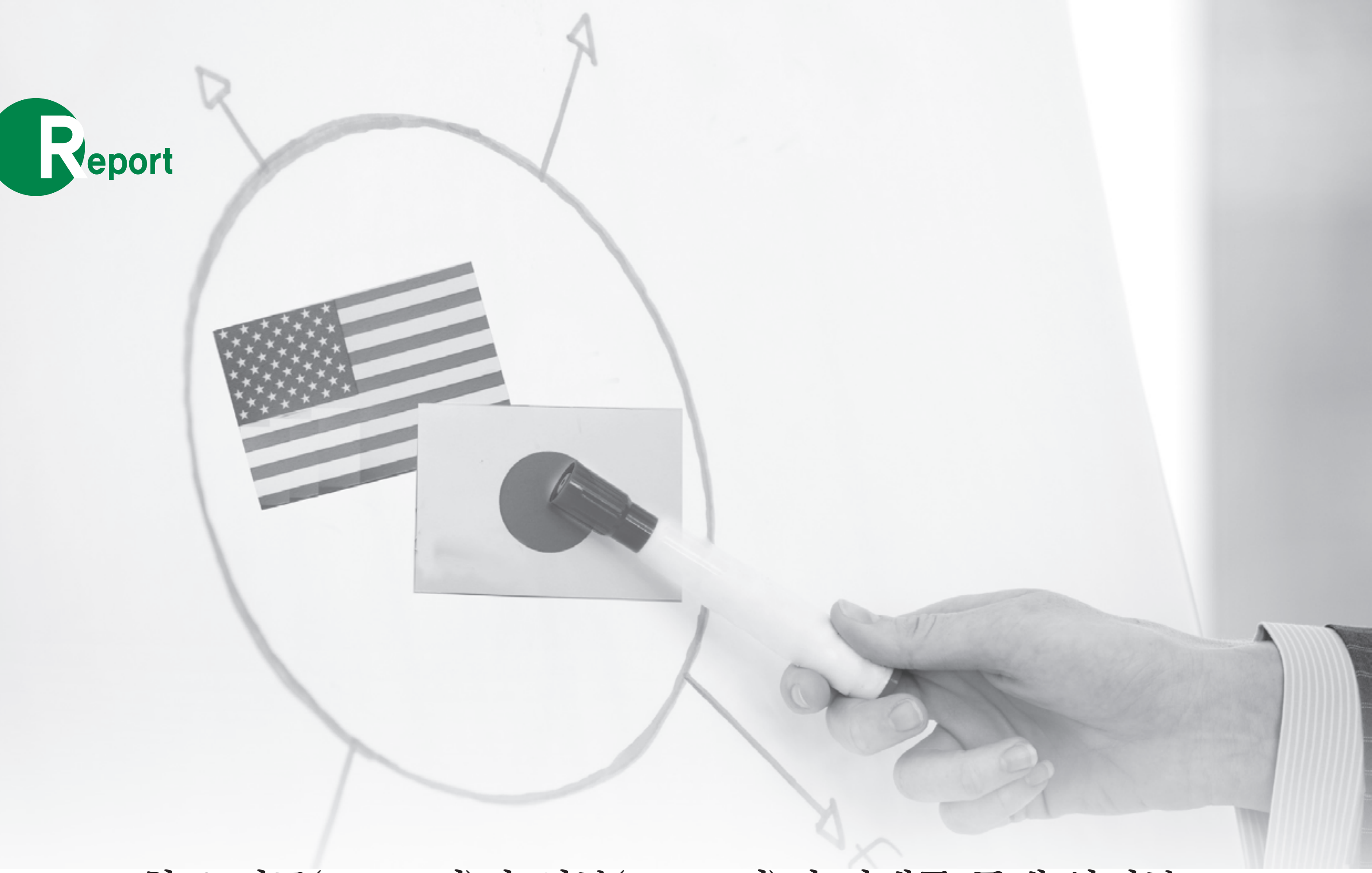

최근 미국(2009년)과 일본(2012년)의 판례를 통해 살펴본

'제법한정 청구항'의 해석론에 관한 고찰

특허법 제2조 제3호는 발명의 '실시'에 관한 정의 규정으로, 발명의 종류를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특허법에서는 발명의 종류를 크게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발명의 범주가 이처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발명도 자주 나타난다. 즉, 어떤 발명들은 청구범위에 '~ 방법으로 제조된 물건', '프로세스 A에 의해 제조된 화합물' 등의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발명은 물건을 청구하면서도 구조나 물성이 아닌 그 물건의 물리적인 존재로서의 특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제조방법에 의해 그 물건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물건의 발명' 또는 '방법의 발명'이라고 구분하기가 곤란하다.

이와 같이 물건을 청구하면서도 제조방법에 의해 그 물건을 한정하는 형식으로 기재된 청구항들을 'Product by Process 청구항' 또는 '제법한정 청구항'(이하, 'PbP 청구항'이라고 부른다)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PbP 청구항들은 물리적인 존재로서의 물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방법적인 요소를 그 구성으로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청구항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된다.

'물건'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제조방법은 그 물건의 구조 및 특성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

기 때문에 그 제조방법에 관한 기재 자체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단지, 그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최종 결과물만이 특허성이나 권리범위 판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방법' 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청구범위에 제조방법이 명시되어 있어 그 제조방법은 발명의 구성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제조방법에 특허성이 인정되면 그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고, 또한 권리범위도 그러한 제조방법에 의해서 제조된 물건에만 미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PbP 청구항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 특허성이나 권리범위를 판단하는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PbP 청구항의 해석론은 특허성 판단이나 침해 여부 판단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에는 현재까지 특허성 판단시의 PbP 청구항 해석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권리범위 판단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은 없고, 특허법원 판결만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미국, 일본의 경우에는 PbP 청구항의 해석에 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많은 관련 판결도 나왔지만, 최근까지도 PbP 청구항 해석에 있어서 완전히 일치된 견해를 보여주진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2009년에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이하, 'CAFC' 라 한다)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그동안 사건별로 견해가 엇갈리던 PbP 청구항 해석론을 명확히 정리했고, 일본에서도 2012년 1월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PbP 청구항 해석에 관한 엇갈린 입장을 명확히 정리했다.

최근 일본과 미국의 판결에 나타난 PbP 청구항에 대한 해석론은 서로 공통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한 차이점도 있고, 특히, 일본의 최근 판결은 우리나라 판례와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최근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고, 최근 판결이 기존 입장에서 어떻게 변화된 것인지, 우리나라 판례와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PbP 청구항 해석론을 정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필자는, 최근의 미국과 일본의 판결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PbP 청구항의 해석론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시사점을 찾아보고, 우리가 PbP 청구항 해석론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검토해야 할 과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PbP 청구항의 일반적 해석론

개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PbP 청구항은 '~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물건' 의 형식으로 청구된 발명으로서, 청구하고자 하는 발명은 물건인데도 그 청구된 발명의 기술적 특징은 구조나 물성이 아닌 제조방법으로 한정한 것이다. 이러한 형식의 기재로 인해 특허성이나 권리범위 판단시 그 판단 대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다른 해석론이 나타나게 된다.

첫 번째 해석론은 PbP 청구항도 물건을 청구하는 '물건의 발명' 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조된 물건 그 자체를 판단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으로, '동일성설' 또는 '물건 동일성설' 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 해석론은 청구항에 제조방법이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방법 그 자체를 발명의 구성요소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고, 그러한 제조방법으로만 제조된 물건을 판단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으로, '한정설' 또는 '제법 한정설' 이라고 부른다.

결국 '물건 동일성설' 과 '제법 한정설' 은 물건의 구조나 특성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제조방법 그 자체를 그 발명의 구성요소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물건 동일성설에 따른 해석론

물건 동일성설은 PbP 청구항도 결국은 '물건의 발명' 이라는 관점에서, 물건의 구조나 특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조방법 그 자체는 청구항 해석시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접근법이다. 즉, 제조방법은 물건의 구조나 특성을 특정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특허성이나 권리범위 판단시 그 방법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간혹 '물건 동일성설' 이 제조방법 그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 물건 자체만을 판단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물건 동일성설' 을 따르더라도 제조방법의 기재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물건 그 자체만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은 제조된 그 물건의 구조나 특성을 특정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그 제조방법에 의해 특정된 물건' , 즉,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최종 결과물' 이 판단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물건 동일성설에서도 '물건 A' 와 '~ 제조방법의 의해 제조된 물건 A' 는 동일하다고 해석될 수 없는 것이다.[1] 물론 한정된 제조방법이 물건의 구조나 물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지, 제조공정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면 한정된 제조방법은 최종 결과물의 물리적인 특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제조방법 그 자체는 완전히 무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결국은 제조방법을 고려하여 그 제조된 결과물을 판단대상으로 삼은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 물건 동일성설 '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한정된 제조방법은 제조된 그 물건의 구조나 특성을 특정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조방법에 의해 특정된 부분' 은 결국 물리적 존재로서 가지는 특징을 특정한 것이고, PbP 청구항도 '물리적 존재로서의 특징을 가지는 물건' 을 청구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물건 동일성설' 이라는 용어보다는 '결과물 특정설' 이라는 용어가 더 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2] 필자도 '물건 동일성설' 이라는 용어가 제조방법은 그 자체로서 완전히 배제하고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3], '결과물 특정설' 이라는 용어가 더 타당한 용어라고 생각된다.

한편 물건 동일성설에 따라 PbP 청구항을 해석하게 되면 발명의 기술적 범위가 불명확해진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왜냐하면, 물건 동일성설에 따라 특허성이나 권리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된 최종 결과물이 어떤 구조나 특성을 갖는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PbP 청구항은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그 발명이 특정되어 있어서 최종 결과물이 갖는 구조나 특성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4] 따라서, 물건 동일성설 입장에서는 판단 대상인 발명을 명확하게 특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특허성 여부나 권리범위 속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원칙적으로 물건 동일성설을 채용하더라도, 최종 결과물이 갖는 구조나 특성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방법에 의해 특허성이나 권리범위를 판단하는 '제

법 한정설' 입장을 채용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한, 물건 동일성설은 출원인이 기술적 구성 요소로 기재한 제법한정을 임의적으로 배제시켜 물의 권리로만 제한 해석한다는 점에서 그 근거가 미약하고 특허청구범위 해석이론에도 벗어난다는 비판도 있다.[5)]

제법 한정설에 따른 해석론

제법 한정설은 어떠한 발명의 특허성 및 권리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판단대상은 청구범위의 기재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범위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제조방법을 의미 없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해석론이다. 따라서 물건 그 자체가 이미 공지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조방법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갖는 경우라면 그 청구항은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PbP 청구항의 권리범위는 해당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물건에 까지만 미치기 때문에, 동일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청구항에 기재된 것과 다른 방법에 의해 제조된 것이라면 그 물건에 대해서는 침해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제법 한정설에 따르면, PbP 청구항은 당해 물건이 '어떤 제조방법에 의해 생산된 것인가' 라는 과정을 한정한 것으로, 그 과정에 해당하는 제조방법에 특징이 있는 물건을 청구한 것이어서 제조방법이 그 발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고, '과정 한정설' 이라고도 부른다.[6)]

제법 한정설은 청구항에 제조방법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 제조방법을 선행기술이나 확인대상발명과 대비하면 되기 때문에, 특허성이나 권리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대상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제조방법을 그 구성으로 한정하여 청구항을 기재한 출원인의 의사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신규 화합물이나 단백질 등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는 그 물의 구조나 특성을 특정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조방법으로 그 발명을 한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물만을 그 권리범위로 한정 해석하는 것은 출원인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PbP 청구항은 결국 물건을 청구한 것이어서 '물건의 발명' 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존재로서의 특징이 있는 발명' 이 아닌 물건의 물리적인 존재(구조나 특성 등)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제조방법에 의해 그 발명의 특허성이나 권리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한정된 제조방법이 물건의 구조나 물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지 제조공정의 효율화를 위한 것인 경우에 더욱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물건 동일성설과 제법 한정설 모두 PbP 청구항을 완벽하게 해석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 국가의 법원에서 채용하고 있는 해석론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PbP 청구항의 해석에 대해 많은 논쟁이 일고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는 PbP 청구항 해석론의 일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다음에는 미국과 일본에서 각각 2009년과 2012년에 나온 최근 판결이 그 이전의 PbP 청구항 해석론과 대비해 어떻게 입장이 변경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입장 변화가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등을 살피기로 한다.

1) 경우에 따라서, 제조방법을 고려하더라도 '~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물건 A'의 구조나 특성이 단순한 '물건 A'와 특별히 달라지지 않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제조방법 그 자체를 무시해도 되기 때문에 동일한 판단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일본 パテンと 2011 Vol. 64 No. 15 "Product by Process 청구항에 대한 고찰" 참조
3) 실제 특허청의 심사 심판 실무에서도 간혹 물건 특정설에 기초해서 제조방법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고 판단하는 사례가 나타나곤 한다.
4) 그러나, 발명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상세한 설명을 참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해서 그 물건의 특성을 파악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박길채, Product by Process 청구항, 특허와 상표 652호(2006. 10. 20.)
6) 일본 パテンと 2011 Vol. 64 No. 15 "Product by Process 청구항에 대한 고찰" 참조

한편, 심사·심판 또는 심결 취소소송 사건에서 해당 발명의 특허성 여부를 판단할 때와 특허침해 사건에서 권리범위 속부를 판단할 때에 있어서 각각 적용되는 PbP 청구항의 해석론이 서로 달라지기도 하기에, 아래에서는 특허성 판단시와 권리범위 판단시를 구분해서 PbP 청구항 해석론이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에서의 PbP 청구항 해석론

2009년 CAFC 전원합의체 판결(Abbott Laboratories v. Sandoz 판결) 이전의 청구항 해석론

특허성 판단시의 청구항 해석론

미국 특허청의 심사지침서인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이하, 'MPEP')' 에는 PbP 청구항의 해석과 관련해서 "PbP 청구항이 방법에 의하여 특허청구항을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허 가능성은 물건 그 자체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PbP 청구항에 기재된 물건이 선행기술에 의한 물건과 동일하거나 그로부터 자명한 것인 이상 비록 그것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제조되었다 하더라도 신규성이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7]. 즉, 미국 특허청의 실무는 특허성 판단시 '물건 동일성설' 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품을 만드는 방법의 단계들에 의해서만 제품이 정의될 수 있는 경우 또는 제조방법의 단계들로 인하여 독특한 구조적 특징을 최종 제품에 부여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 경우,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PbP 청구항의 특허성을 평가할 때 그 방법 단계들에 의해 수반되는 구조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도 기재되어 있어, '물건 동일성설' 이라고 하더라도 제조방법 그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 제품의 구조를 특정하기 위해 제조방법이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PbP 청구항에서 물리적인 설명이 결여되어 있으면, 청구항에서는 단지 방법 한정사항만을 열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거된 방법 단계들의 특허성이 아니라 그 청구항 제품의 특허성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청구항의 특허성을 결정하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된다. 따라서 PbP 청구항에서 청구된 제품과 동일하거나 약간만 다른 것으로 논리적으로 보여지는 제품을 선행기술이 개시하고 있는 때에는 신규성 또는 진보성으로 거절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한편 미국 CAFC도 최초 사건에서부터 'PbP 청구항이 방법에 의하여 제한되고 정의되더라도 특허성 유무의 결정은 물건 자체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거나, '이미 공지된 물건이 존재할 경우 그 후에 새로운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물건이 있더라도 특허성은 부정된다' 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어[8], 미국에서는 특허성 판단시 특허청이나 법원에서 모두 일관되게 '물건 동일성설' 의 입장을 채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침해소송에서 권리범위 판단시 청구항 해석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특허성 판단시 일관되게 물건 동일성설에 기초해서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최종 물건이 판단대상이 되고, 제조방법 그 자체는 판단대상

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런데 침해소송에서 권리범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2009년 'Abbott Laboratories v. Sandoz 판결'이 나오기까지 두 가지 상반된 이론, 즉, '물건 동일성설'과 '제법 한정설'이 병존해 왔다.

즉, CAFC는 1991년 Scripps 판결에서는 '물건 동일성설'에 기초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한 반면, 1992년 Atlantic Thermoplastics 판결에서는 '제법 한정설'에 기초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그 이후, 미국 법원에서는 사건에 따라 두 가지 해석론을 각각 적용해 왔다.

먼저, CAFC의 1991년 Scripps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원고인 Scripps사의 발명은 '고순도 · 고농도의 FactorVIII : C'에 관한 것인데, 피고인 Genentech사는 원고의 방법과는 달리 '유전자 재조합 방법(DNA Recombinant)'으로 FactorVIII : C를 생산하고 있어, 제조방법이 다른 피고의 발명이 원고 발명의 특허침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1심에서는 동일한 제조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침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행위가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인 CAFC는 특허성 여부 판단시 물건은 청구범위 기재의 제조방법으로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청구항 해석은 특허성 여부 판단시와 침해 여부 판단시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해야 하므로, 침해 여부 판단시에도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건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생성된 물건이 동일한 이상 특허침해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CAFC의 1992년 Atlantic Thermoplastics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원고 Atlantic사의 발명은 '충격 흡수용 신발 깔창'에 관한 것인데, 피고의 대상 물품은 원고의 제조법과 상이하지만 그 제품은 동일한 것이어서, 이 경우에도 특허침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1심에서는 제조방법이 다르므로 피고가 원고의 물건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인 CAFC는 먼저, 선행 대법원 판결은 모두 방법에 의해 한정된 물건 청구항은 당해 방법과 분리되어 해석될 수 없고, 따라서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물건만이 PbP 청구항을 침해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진 물건은 PbP 청구항을 침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여 왔다고 인정했다. 또한 PbP 청구항의 특허성 판단 단계에서는 '최광의 해석원칙'에 의해 물건 청구항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이와는 달리 침해판단 단계에서는 이러한 접근은 인정될 수 없고, 청구항 해석시 청구항을 제한하는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청구항에 기재된 용어를 적절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설명, 출원 경과, 선행기술 및 다른 청구항 등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특허원리라고 설시하면서, 제조방법을 청구항 해석시에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특허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어서 받아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 Atlantic Thermo plastics 판결은 특허성 여부 판단시와 권리범위 여부 판단시 청구항 해석론이 상이할 수 있다는 소위 이원론을 인정한 것이다.

위 상반된 두 개의 판결 이후 Scripps 판결의 결론을 따른 판결들과 Atlantic Thermoplastics 판결의 결론을 따른 판결이 각각 선고되어 왔는데, 대체로 Atlantic 사건의 판

7) "[E]ven though product-by process claims are limited by and defined by the process, determination of patentability is based on the product itself. The patentability of a product does not depend on its method of production. If the product in the product-by-process claim is the same as or obvious from a product of the prior art, the claim is unpatentable even though the prior product was made by a different process. (중략) The structure implied by the process steps should be considered when assessing the patentability of product-by-process claims over the prior art, especially where the product can only be defined by the process steps by which the product is made, or where the manufacturing process steps would be expected to impart distinctive structural characteristics to the final product." (MPEP 2113 참조)

8) In re Thrope 판결(1985), Atlantic Thermoplastics Co., Inc v. Faytex Corp 판결(1992), SmithKline Beecham Corp. v. Apotex Corp. 판결 등

결이 선례로서 무게가 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9)]

2009년 CAFC 전원합의체 판결(Abbott Laboratories v. Sandoz 판결) 이후의 청구항 해석론

개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2009년 이전까지 미국에서는 특허성 판단시에는 '물건 동일성설'로 일관된 해석론을 채용하였지만, 침해사건에서 권리범위 판단시에는 Scripps 판결에서 채용한 '물건 동일성설'과 Atlantic Thermoplastics 판결에서 채용한 '제법 한정설'로 견해가 엇갈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권리범위 판단시 청구항 해석론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9년 CAFC에서는 Abbott Laboratories v. Sandoz 사건을 통해 특허침해소송에서의 PbP 청구항의 해석론을 전원합의체로 명확하게 정립했다.

다만 특허성 판단에서의 해석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므로 여전히 종래와 같이 '물건 동일성설'이 적용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2009년 Abbott Laboratories v. Sandoz 판결의 주요 내용

CAFC는 2009년의 Abbott Laboratories v. Sandoz 사건에서 Scripps 사건의 선례적 가치를 명시적으로 폐기하고, Atlantic 사건에서의 태도를 공식적 입장으로 정리했다. PbP 청구항의 경우 청구항에 기재된 방법은 그 특허의 권리범위를 한정하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이와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한 결과로서 물건이 같더라도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특허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서 PbP 청구항의 해석론을 명확히 하였다.

위 판결은 "PbP 청구항의 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제법(the claimed process steps)을 실시해야 한다. 즉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제조방법으로 한정된 범위 내로 제한한다"고 판시하면서, 이와 배치되는 한도에서 Scripps 판결을 폐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CAFC는 ① 만약 물건의 구성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방법으로 한정하여 물건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고 실제로도 물건으로서의 넓은 권리범위를 인정한다면, 제3자의 실시형태가 침해를 구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도 과연 그것이 특허된 물건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것인지가 확인되어야 하는바, 이 역시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고, ② 물건 발명의 구성을 명확히 하여 권리범위의 외연을 특정하는 것은 명세서 기재에 관한 발명자의 책무인데, 이를 다하지 못한 채 '방법'의 형태로 물건의 특허 청구항을 구성한 발명자를 위하여 그 특정 방법 이외의 실시형태에까지 권리범위를 인정하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10)]

위 판결에 대해서 3명의 판사가 특허가 청구되는 시점에 명확한 구조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법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을 피력하였다. 그 중 Lourie 판사는 물건이 신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법이 상이하면 침해가 아니지만 물건이 신규한 경우에는 단순히 다른 방법으로 제조되었다는 것만으로 침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11)]

위 소수의견은 청구된 발명의 구조를 명확히 알 수 없거나, 그 발명이 최초로 발견된 것일 경우에는 그 물건과 동일한 것에까지 그 권리범위가 미친다는 것으로, 발명자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Abbott Laboratories v. Sandoz 판결에 대한 검토

2009년 Abbott Laboratories v. Sandoz 판결을 통해 미국에서는 특허성 판단시와 권리범위 판단시에 PbP 청구항의 해석론을 다르게 적용하는 이원론적인 해석론이 정립되었다. 즉, 특허성 판단시에는 물건 동일성설에 기초해

서 제조방법이 상이하더라도 최종 제조된 물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권리범위 판단시에는 침해 물건이 PbP 청구항에 의한 물건과 동일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이 상이할 경우에는 침해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입장은 "PbP 청구항의 특허성 판단 단계에서는 '최광의 해석원칙'에 의해 물건 청구항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침해판단 단계에서는 이러한 접근은 인정될 수 없고, 청구항 해석시 청구항을 제한하는 모든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기본적인 특허원리이다"라는 Atlantic Thermo plastics 판결 내용에 잘 나타나 있다. 즉,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특허성 판단시에는 청구항을 가장 넓은 범위까지 인정해서 해석하지만, 권리범위 판단시에는 제한할 수 있는 모든 사항(상세한 설명 참작, 금반언 등)을 고려해서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른바 이원적인 청구항 해석론에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또한, Abbott Laboratories v. Sandoz 판결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물건 동일성설의 입장을 취할 경우 그 특허발명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어 권리범위 속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론은 폐기된 CAFC 판결인 'Scripps 판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특허성 판단시와 권리범위 판단시의 청구범위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소수 의견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새로운 화합물 등을 발견하였음에도 출원 당시에 그 구조나 특성으로 발명을 특정하기 곤란해서 제조방법으로 한정한 경우, 출원인 입장에서는 특허성 판단과 권리범위 판단이 상이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문제도 있어 보인다.

결국 미국에서는 PbP 청구항의 경우 제조방법이 직접적으로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성을 인정받기는 어렵고, 특허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권리범위는 제조방법으로 한정해석하여 그 권리가 협소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특허출원을 할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PbP 청구항으로 기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일본에서의 PbP 청구항 해석론

지적재산고등재판소 2012. 1. 27.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의 청구항 해석론

특허성 판단시의 해석론

2012. 1. 27.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이하, '지재고재'라 한다) 판결(이하, '나트륨 판결'이라 한다) 이전 일본에서는 특허성 판단시 물건 동일성설에 기초해서 PbP 청구항을 해석해 왔다. 일본에서 특허성 판단시 PbP 청구항의 해석론을 판시한 대표적인 판결로는 동경고등재판소 2002. 6. 11. 판결(광 디스크용 폴리카보네이트 성형 재료)이 있다.

이 판결은 "물건 자체로서의 특허를 얻고자 하는 자는 본래부터 발명의 대상으로 되는 물건의 구성을 직접적으로 특정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

9) 최성준, 민사재판의 제문제(2010. 12.) Product by Process Claim에 관하여
10) 조영선 저, 특허법(제3판), 박영사, 62~63면.
11) 최성준, 민사재판의 제문제(2010. 12.) Product by Process Claim에 관하여

구하고 Product by Process Claim이라는 형태에 의하여 특정이 인정되는 것은 발명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구성을 제조방법과 무관하게 직접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 곤란 또는 어떤 의미에서 부적절한 경우 그 물건의 제조방법에 의하여 물건 자체를 특정하는 것에 예외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까닭이므로, 그와 같은 발명에 관하여 그 특허요건이 되는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법요건에 관하여 발명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구성을 특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관점으로부터 검토하여 그것을 판단할 필요는 있으나, 그 이상으로 그 제조방법 자체로서 신규성 또는 진보성 등을 검토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은 PbP 청구항의 제법요건에 관해서 그 특허성(신규성 내지 진보성)을 검토할 때 제조방법으로서의 특허성 여부는 검토할 필요가 없고, 단지, 제조방법이 물건의 구성을 특정한 요건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검토하면 족하다는 것을 명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12] 즉, 제조방법에 의해 특정된 물건이 물리적인 존재로서 어떤 특성을 갖는 것인지를 검토해서 특허성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지재고재 2006. 12. 7. 판결도 "Product by Process Claim이라는 형식에 의한 특정이 허용되는 것은 그 물의 제조방법에 의하여 물 자체를 특정하는 것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야 하고, 그 경우에도 당해 제법은 어디까지나 그 결과 제조되는 물의 구성을 일의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기능하는 것이므로, 당해 제조방법과 다른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이라도 물의 구성이 객관적으로 같다면 당해 발명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였다.[13]

종래의 위 두 판결을 보면, PbP 청구항의 형태로 기재하는 것은 물건의 구성을 제조방법과 무관하게 직접 특정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고, 또한, PbP 청구항으로 기재된 발명에서 제조방법은 그 물건이 어떻게 제조된 것인지를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종 결과물인 물건의 구성이 무엇인가를 특정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위 판결들은 일본 특허청의 심사기준과도 일치하는데, 일본 특허청의 심사지침서에는 "청구항 중에 제조방법에 의하여 생산물을 특정한 기재가 있는 경우에도 그 기재는 최종적으로 얻어진 생산물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출원인 스스로의 의사로 '오로지 A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Z'와 같이 특정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건만으로 한정하려고 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도 이와 같이 해석한다. 그러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제조방법과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동일한 생산물의 제조가 가능하고 그러한 생산물이 이미 공지되어 있다면 그 청구항의 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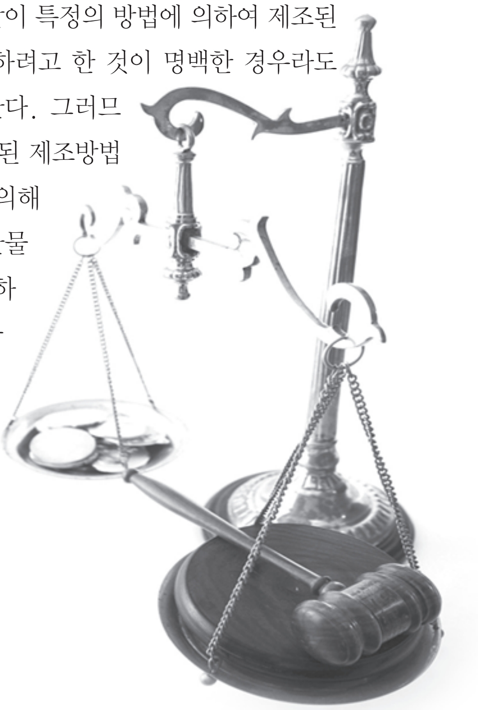

침해소송에서 권리범위 판단시 청구항 해석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년 이전 특허성 판단시 PbP 청구항의 해석은 특허청과 법원의 판단이 모두 '물건 동일성설'로 일치하고 있는데, 침해소송에서 권리범위 판단시의 청구항 해석론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 견해가 갈리고 있다. 일부 판결에서는 '물건 동일성설'을 지지하고 있지만, '제법한정설'을 지지하는 판결도 종종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2년 이전 일본 판례의 일반적 태도는 제조

방법으로 한정된 청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항의 물건과 동일한 물건에까지 그 권리범위가 미친다는 입장이다. 1981. 6. 30. 최고재판소 판결[14], 1998. 11. 10. 최고재판소 판결[15]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16]

다만,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등 일부 하급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술적 범위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건에 한정된다는 제법 한정설의 입장을 채용한 판결도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동경지방재판소 2002. 1. 28. 판결(고정용 도구 및 끝 고정용 장치 사건)은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의미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런데 물건의 발명에 있어서 물건의 구조 내지 성질만으로는 발명의 목적인 물건을 특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아서 부득이 물건의 제조방법을 부가하는 것에 의하여 특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특허청구범위에 발명의 목적을 특정하는 부가요소로서 제조방법이 기재되었다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건에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제조방법'에 의하여 권리범위가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조방법으로 한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건' 전체에까지 권리가 미친다는 법리를 설시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론은 뒤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사하게 채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트륨 판결 이전의 해석론 검토 결과

2012년 이전까지 일본 특허청의 심사·심판 실무나 법원 다수의 판결은 '물건 동일성설'에 근거해서 PbP 청구항을 해석하고 있었지만, 일부 법원 판결에는 특허침해 소송에서의 권리범위 판단시 '제법 한정설'의 입장을 채용하고 있는 등 PbP 청구항에 대한 해석론이 일본 법원 내부에서 정립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2009. 5. 18. 미국 CAFC 전원합의체에서는 일본의 주된 입장과 달리, 침해소송에 있어서 모든 PbP 청구항을 제법 한정설에 근거해서 해석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 일본 내에서도 PbP 청구항의 해석론을 둘러싼 논의가 더욱 빈번해지게 되었다. 특히 '물건 동일성설'에 기초하여 해석할 경우 청구된 발명을 명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2011. 7월 일본 지재고재는 PbP 청구항에 관련되는 특허침해 소송사건을 대합의로 심리할 것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2. 1월 일본 지재고재에서 PbP 청구항의 해석과 관련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게 되었다.[17] 2012. 11

다음 호에 계속

김 병 필
대법원 민사과 서기관

12) 비교특허판례연구회 역, 특허판례백선(3판), 박영사, 444~449면 참조.
13) 지적재산권の이론と실무 I 특허법 (2007. 6.), 157면.
14) "실용신안법에서의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을 말하고, 제조방법은 고안의 구성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고안의 기술적 범위는 물품의 형상 등으로 판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고안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지 아닌지의 판단을 위하여 제조방법이 서로 다른지를 고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5) "물건의 발명에 있어 특허청구의 범위에 당해 물건의 형상을 특정하기 위한 작도 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작도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형상과 동일한 형상을 구비하는 것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기 위한 요건으로 되는 것이고, 위 작도방법에 의하여 제조되고 있는 것이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본건에서는 피상고인이 제조, 판매하는 제품이 위 작도방법에 의하여 얻어지는 형상과 동일한 형상을 갖는 것에 대해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16) 최성준, 민사재판의 제문제(2010. 12.) Product by Process Claim에 관하여
17) 일본 パテンと 2011 Vol. 64 No. 15 "Product by Process 청구항에 대한 고찰" 참조

영업비밀보호와 인적보안(Personal Security)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을 고려한 보안조치

C그룹이다.

Complaining. 불평불만을 일삼는 사람들이다. 정당한 불만을 포지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대체로 매사에 불평불만을 해댄다. 만족하는 법이 없다. 이들을 찾아내는 방법은 단순하다.

이들은 조직의 주요한 행사와 회식에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자주 빠진다. 건설적인 대안을 내는 게 아니라 뒤 담화를 즐기며 그냥 비난과 비평에만 능숙하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불평불만이라는 것은 대체로 만족되지 못한 욕구(unmet needs)가 있음을 뜻한다. 욕구불만이다 보니 조직과 갈등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Maslow가 설파했듯 생리적욕구, 안전욕구, 소속욕구, 존경욕구와 자아실현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이다.

신세대 직장인들은 일터에서 불공정하다는 감정을 느끼기 쉬운 많은 태도를 갖고 있다. 첫째, 취약한 신분보장(job security)은 그들이 그들 스스로 돌봐야하기 때문에, 그들을 돌본다는 회사를 믿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둘째, 장기적인 보상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지 못하는 결과로 그들 모두는 모든 것을 오늘 원하고 바로 오늘 보상받기를 원한다. 인센티브, 피드백 및 보상은 매우 중요하나, 그것이 받아들여

지지 못할 때 불만과 분노에 이르게 된다.

셋째, 그들은 직장 상사에 의해 소중하다고 느껴지길 원하며, "내가 시킨 대로 해"(do-it because I said so)와 같은 경영 스타일에 잘 따르지 않는다.

넷째, 그들은 경력 개발에 매우 관심이 많으며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길 기대한다. 그들은 결과를 향해 돌진할 때 그들의 전진에 거추장스러운 규칙과 절차를 회피할 것이다.

공정성 이론(Equity Theory)을 영업비밀보호법에 적용함에 따라서, 이 이론은 종업원들이 어떻게 그들의 예상과 관련 있다고 느끼는지를 평가하는데 적절한 듯 보인다. 그들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과소평가 받고,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때, 대체로 분개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회사가 그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에 까지 이르면 회사에 대한 복수심에 불탈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신세대 종업원들이 불공정한 상황에 대해 균형을 복원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느끼는 환경을 만든다. 그 인식된 불공평을 보상하기 위해 그들은 그들 자신의 승진 혹은 다른 고용주에게 자신의 가치를 더 하는 방식으로 고용주의 영업 비밀을 취하거나 이용하려 들지 모른다. 이것이 수많은 영업 비밀의 사례 중 익숙한 스토리라인이다.

예를 들어, Anadarko Petroleum Corp. v. Davis의 사례를 상기하면, 기술자 Davis는 불만스러워지고, 승진에 누락되고 '한직으로 밀렸다' 고 느꼈다. 그는 또한 관리자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 결과 그는 영업 비밀을 가지고 경쟁사로 전직했다.

또한 Lexis-Nexis v. Beer 사례에서 보듯, 보상에 불만스런 종업원은 사직하고 경쟁회사로의 고용을 수락했으나 그는 이전 고용주의 고객 정보 데이터베이스까지 가져오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PepsiCo, Inc. v. Redmond (7th Cir. 1995) 사례의 Redmond(캘리포니아주 영업책임자)와 달리 낮은 직책의 종업원은 회사 정책과 전략을 잘 알지 못하므로 불가피한 누출(inevitable disclosur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평소 인사관리부서는 직원들과의 신상상담을 통해 직원들의 욕구불만상태를 잘 관찰해야 한다. 이러한 불만 상태의 감소와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고가의 물리적, 기술적 보안장비를 도입하고 보안교육을 실시함은 예산낭비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런 돈이 있으면 직원 복지에나 신경 쓰지' 등의 또 다른 비아냥만 들을 수도 있다.

D그룹이다.

Degenerate(=Corrupt). 퇴폐적이고 타락한 사람들이다. 각종 금품과 향응을 받는 사람들이다.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고기도 먹어 본 놈이 먹는다고 자꾸 하다 보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영화 투캅스에서 형사로 분한 안성기는 관내의 업주에게 식사나 하자고 전화를 걸어서는 자신은 회를 좋아한다고 말한다. 다음 장면은 물론 횟집이다.

각종 갑을관계가 동원된다. 필자가 아는 어느 하청업체 사장은 자신이 납품하는 원청업체의 부장이 자기 부인이 바빠서 그러니 자기 자식 수능시험장에 자동차로 데려다달라고 전화를 걸어왔다고 했다. 그 날 아침에 그는 어떤 심정으로 운전을 했을까? 밤새 술시중도 모자라...비참한 굴욕감을 느꼈음에 틀림없다.

금품과 향응(red-carpet treats)을 즐기는 사람들이기에 조직의 모든 자원은 자신이 이러한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재료에 불과하다. 죄의식도 없다. 누군가 기술유출을 요구하면 쉽게 카피해서 가져다 팔 사람들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람들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조직에 적대적인 감정과 태도를 가진 게 아니라 그냥 방치하면 결과적으로 조직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부류이다. 상담과 교육의 효과가 큰 집단이다.

먼저 a그룹이다.

addicted. 중독된 사람들이다. 알코올, 게임, 도박 등에 중독된 폐인들이다. 개그맨 황00, 가수 신00, ..공정위의 모 국장에 이르기 까지 카지노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 집집마다 게임 페인이 부모자식 간에 큰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이들이 회사에서는 멀쩡할까 의문이다. 요즘 소주 도수가 낮아지다 보니 여자들의 알코올 중독도 상당히 늘었다고 한다.

이렇듯 뭔가에 중독된 사람들은 위험하다. 개인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문제 있음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됨을 의미한다. 직장 업무에의 몰입(flow)은 애당초 어려울 듯하다. 술에 취해 택시에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놓고 내리는 등 회사 비밀을 흘리고 다닐 소지가 다분하다.

제프리 폭스는 'How to become a great boss?' 에서 어느 조직에서 있기 마련인 'D-바이러스'를 치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Drinking(음주), Dice(도박), 마약(Disease), 빚(Debt), 부업(Double-Dipping) 등으로 이러한 것들은 개인에게 치명적 문제를 안기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과 친구 및 직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직원들을 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조직에 큰 해를 끼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들은 그 징후를 발견하기가 다소 용이하다. 심리상담과 치료를 통해 이들을 정상적인 생활로 이끌어내야 한다. 이들은 조직에 적대적이고 악의적인 사람들이 아니므로 휴가 제공 등을 통해 재기에 함께 힘써야 할 것이다.

b그룹이다.

blate(=spiritless). 맥빠진 사람들이다. 김빠진 사람들이다. 무기력하고 나태한 직원들이다. down, depressed, exhausted, flat, frustrated, insipid, lifeless, listless, stale, vapid, worn-out. 마지못해(unwilling) 일하는 사람들이다. 좌절한 사람들이다.

상사의 업무 지시에 '네' 밖에 할 줄 모르는 '예스맨'들에 이런 사례가 많다. 창의성과는 거리가 멀다. 업무의욕이 결여되어 있다. 출근해서 인터넷쇼핑과 주식투자 등에 회사의 시간을 허비하고, 때 되면 당연히 월급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무심하고 무책임하다. 조직의 미션과 비전은 딴 나라 얘기이다.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직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근무의욕을 꺾기 일쑤이다. '쟤는 노는데 왜 나만...같은 월급 받으면서...' 식이 되기 싶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격이다.

무기력하고 감각이 떨어지다 보니 보안의식도 매우 취약하다. 실수로 정보를 유출한다.

이들에게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이들이 왜 맥이 빠졌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만 한다. 이들의 속마음을 진지하게 들어주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다. 경청해주고 격려해주라. 동기부여가 잘 되면 보안교육도 효과적이 될 수 있다. 이들에게는 교육이 씨가 먹힐 수 있다.

c그룹이다.

Careless(=negligent). 부주의한, 태만한 사람들이다. 자기도 모르는(부지중=unwitting)사이에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들이다.

신입 직원과 프런트 상담 직원 등에 이런 사례가 많다. 이들에 대해 세상 물정과 보안교육을 함께 함이 바람직하다. 사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들 같이 순진한 사람들에게 세상에 나쁜 사람들 천지라는 식으로 교육하면 마치 교육자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또한 무슨 그런 큰 사고가 있겠냐는 식의 낙관주의자들이 있다. '그까이꺼 대충' 식이다.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줘야한다. 사람이 이기적이어서 자기 일은 신경써서 하고 남의 일은 대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도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사람인 것이다. '선량한 관리자'로 부적합한 사람들인 것이다.

이들에게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함이 효과적이다. 이들과 비슷한 연령대의 직원이 나서서 '여러 종류의 나쁜 사람들'에 대해 실경험 위주의 간증 형식으로 알려주면 효과가 크다. 내 일 보다 더욱 신경 써서 회사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일깨워줘야 한다.

담배꽁초 하나가 큰 산불을 내어 산에 사는 많은 동물들이 불타 죽는 모습처럼, 부주의한 일 처리로 회사가 망하고 한솥밥 먹으며 함께 일 하던 직원들이 실업자 신세가 되는 모습을 보면 책임감을 일깨우는데 도움이 된다.

d그룹이다.

destitute(=needy). 궁핍한 사람들이다. bad off, deprived, impoverished, indigent, poor. 물질

적으로 궁핍한 경우이다. 이유야 다양하지만 돈이 궁하다는 점은 공통이다.

조직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 '여보, 애들 학원비 내야 하는데...' 하는 아내의 말이 하루 종일 귓가에 울린다. 안타까운 사례이다. Degenerate 부류와는 다르다. 하지만 돈에 대해서는 desperate 일 수 있다. 그래서 위험에 노출될 여지가 있다. 금전적 유혹에 약하다.

평소에 직원들의 고충상담이 잘 이뤄져야 한다. 열린 따뜻한 조직문화여야만 가능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문제 직원으로 찍힐까 두려워 고충을 마음속에 포지하고 있다가 결국 터지고 마는 일이 많다.

특히 연구원들은 매일 연구소에 틀어 박혀 연구만 하다 보면 업무 자체가 따분한데다가 영업직처럼 밖에서 접대를 받거나 이렇게 저렇게 용돈을 마련하는 게 원천 봉쇄된 경우가 많다. '집, 출근, 연구, 구내식당 점심, 연구, 구내식장 저녁, 연구, 퇴근, 집'의 다람쥐 쳇 바퀴 도는 식의 인생이다.

이들은 대체로 세상물정에도 어둡다. 사실 그래야 연구를 한다. 이들에게는 다양한 보상이 필요하다. 금전적 보상 외에 정서적 보상에도 힘써야 한다. '인삼밭의 인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듯' 이들은 경영진 특히 CEO의 격려가 정말 힘이 된다. 2012. 11

김 흥 기
호서대학교 창업학부 교수

Report

특허동향분석 보고서, 보다 쉽고 빠르게 작성해보자!

특허맵 데이터 재활용 및 보고서 자동생성 방안

특허맵(Patent Map ; PM)이란 특허정보의 서지적 사항(출원년도, 출원번호, 출원인 등)과 기술적 내용(요약,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도면 등)을 분석·가공하여 데이터화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정리한 것을 말한다. 즉 복잡한 특허정보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정리한 특허동향분석 보고서라 할 수 있다.

특허맵은 1968년 일본 특허청에서 특허동향을 그래프 형태로 표시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제시한 이후, 1980년대 들어 국내에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작성·활용해오다가 2000년부터는 특허청에서 매년 최신 기술분야에 대해 특허맵을 작성하여 기업체 등에 제공해오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는 국가 법령(대통령령 제18731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05.3.8)에 의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반드시 국내·외 특허동향을 조사하여 해당 사업의 기획·선정·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최근 들어 상당수의 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 등 각 기관에서도 조직 내·외부의 필요에 따라 특허맵을 작성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특허맵은 복잡한 특허동향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국가차원에서든 기관차원에서든 해당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될 것임은 자명하다.

일반적으로 특허맵은 특허검색시스템을 통해

검색한 대량의 특허정보를 필터링, 즉 특정 목적이나 기술분야에 적합한 특허만을 선별한 후 최종 선정된 특허를 대상으로 출원년도, 출원인, 기술분류 등 각종 데이터를 분석 · 가공하여 데이터화한 후 이를 토대로 작성한다. 이처럼 특허맵 작성은 그 작업과정이 꽤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그만큼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특정 1개 기술분야의 특허맵을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경우에 따라서는 수개월씩 걸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엄청난 인력과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여 특허맵을 작성한 후 그 당시 사용했던 가공된 고품질의 특허데이터를 국가차원에서든 기관차원에서든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에 따라 특정 기술분야에 대해 나중에 다시 특허맵을 작성하려고 하면 특허검색에서부터 보고서를 만들기까지의 일련의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특허맵은 일반인이 아닌 특허에 대한 상당한 전문지식을 갖춘 변리사 등 특허전문가만이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허맵을 작성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탓에 일반인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영역으로 간주되어온 것이다. 그에 따라 특허맵 작성은 주로 특허사무소를 비롯한 특허전문기관에서 수행해왔다. 그러나 국가차원에서든 기관차원에서든 특허맵 작성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허전문기관에서도 저마다의 기준에 따라 특허맵을 작성하여 의뢰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맵 작성이 더 이상 특정 기업체나 기관에서의 대외비 성격이 아닌 상당히 보편화되고 있는 시점에 이르렀기에 이제는 그에 대한 표준화도 고려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이에 상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해,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에서 특허맵 데이터의 재활용을 위한 데이터 관리 · 유지는 물론 일반인들도 보다 쉽고 빠르게 특허맵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특허동향분석 보고서 자동생성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에 원자력(연)에서 실제 개발 · 운영 중인 시스템 사례를 토대로 특허맵 데이터의 재활용 및 특허동향분석 보고서 자동생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허맵 데이터 수집 및 가공

특허맵 작성에 있어서의 첫 출발점은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폭넓은 특허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다. 통상 특허 데이터는 일반 특허검색시스템을 통해 입수한다. 그러나 특허맵 작성시 특허검색시스템으로부터 입수한 특허 데이터, 소위 raw-data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특허맵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분야에 적합한 특허만을 선별하는 필터링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필터링된 분석대상 특허에 대해서도 출원년도, 출원번호, 출원인 등의 통일화 작업은 물론 각 건마다 기술분류번호 및 기술요소값을 부여하는 일련의 데이터 정비작업이 필수적이다. 데이터 정비작업은 특허맵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의 80~90%에 육박할만큼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특허맵 데이터의 재활용을 위해서는 이처럼 특허맵 작성시 수반되는 일련의 데이터 정비과정을 거쳐 산출되는 가공된 특허데이터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원자력(연)에서는 원자력분야의 특허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상술한 국가법령에 의거, 제4차 원자력연구개발사업(2012~2016)의 기획단계에서 수행한 특허동향분석 보고서 작성시 사용된 가공된 특허 데이터를 수집했다. 기본 데이터는 한국특허정보원과 (주)윕스의 검색시스템을 통해 입수하였고, 가공 데이터는 특허맵을 실제로 작성한 R&D특허센터와 각 특허사무소로부터 엑셀파일로 입수했다. 이후 이들 데이터 즉 기본 데

이터와 가공된 데이터를 통합하였는데, 통합 후 시스템에 반입된 특허 데이터의 구성요소는 〈표 1〉과 같다.

〈표 1〉 시스템에 반입된 특허 데이터 구성요소

출원국가 / 중요도 / 기술분류 / 기술요소 / 출원번호 / 출원일자 / 발명의 명칭 / 요약 / 청구범위(제1항) / 대표IPC / 전체IPC / 대표출원인 / 출원인 / 출원인국적 / 발명자 / 우선권국가 / 우선권주장일 / 공개번호 / 공개일자 / 등록번호 / 등록일자 / 청구항수 / 미국인용특허 / 패밀리개수 / 패밀리 / Citation 개수 / Citation Ref.

입수된 가공 데이터 중 일부는 얼마간의 정비작업이 불가피했다. 특허맵을 실제 작성한 특허사무소들이 일정한 기준없이 특허맵을 작성해 가공 데이터 역시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실제 예로, 대표출원인의 경우 특허사무소마다 기준을 달리 적용했기 때문에 원자력(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통일화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기술분류와 기술요소 역시 원자력(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로 코드화하였는데, 특히 기술분류의 경우 대/중/소분류로 나뉜 각각의 기술분류명에 코드번호를 부여하였다. 참고로, 기술분류코드는 대분류(숫자2문자) + 중분류(알파벳1문자) + 소분류(알파벳1문자)로 구성하였는데, 〈표 2〉와 같다. 기술요소코드는 대분류(숫자2문자) + 기술요소명(알파벳 1문자) + 기술요소값(알파벳1문자)로 구성하였으며, 〈표 3〉과 같다.

〈표 2〉 기술분류코드 적용 예

대분류(코드)	중분류(코드)	소분류(코드)
제4세대 소듐냉각 고속로 기술 (11)	노심계통(11A)	노심구조(11AA)
		노심내 유체 유동(11AB)
		... 〈후략〉 ...
	유체계통(11B)	유체계통 개념설계(11BA)
		안전계통(11BB)
		... 〈후략〉 ...

〈표 3〉 기술요소코드 적용 예

기술분야	기술요소명	기술요소값	기술요소코드
PWR 사용후 핵연료 부피감용기술	파이로 프로세싱 목적별 분류	회수율 증대	51ba
		생산성 증대	51bb
		... 〈후략〉 ...	
	파이로 프로세싱 해결수단별 분류	바스켓구조	51aa
		전극구성	51ab
		... 〈후략〉 ...	

특허동향분석 보고서 자동생성 시스템

원자력(연)에서 개발, 활용 중인 특허동향분석 보고서 자동생성 시스템은 〈그림 1〉과 크게 특허검색, 데이터 편집 및 특허맵 생성 등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화면단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시스템의 기본 구성

시스템 접속 ⇨ [1단계] 특허검색 ⇨ [2단계] 데이터 편집 ⇨ [3단계] 특허맵 생성 ⇨ 보고서 관리

특허검색 단계 [1단계]

시스템의 로그인 화면에서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화면 1〉와 같이 메인화면이 나타난다. 메인화면은 작업순서에 따라 '특허검색', '데이터편집', '특허맵작성', '보고서관리'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이 화면에서 '데이터구축'은 특허 데이터 수정, 반입 및 반출 등

〈화면 1〉 시스템 메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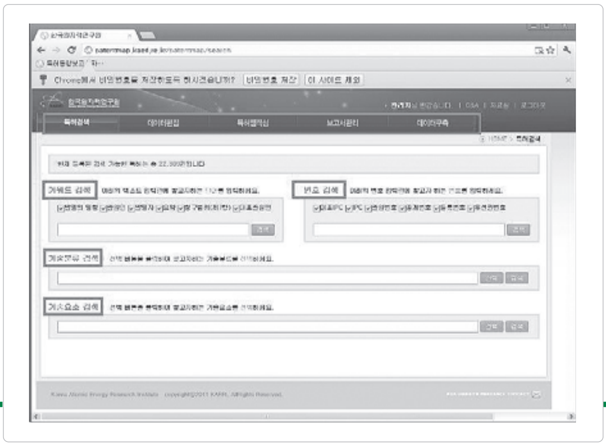

을 위한 것으로 시스템 관리자에서만 나타난다.

이 화면에서는 분석대상 특허를 각종 키워드나 번호는 물론 기술분류나 기술요소로 검색할 수 있다. 특히 기술분류는 대/중/소분류 단위로 검색이 가능하며, 기술요소는 기술요소명이나 기술요소값으로 검색할 수 있다. 〈화면 2〉는 기술분류 검색을 통해 나타난 검색결과 화면으로, 검색된 특허의 일부 또는 전체를 선택하여 분석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다.

〈화면 2〉 검색결과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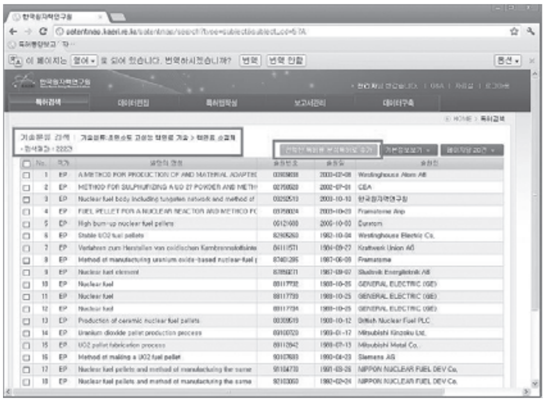

데이터 편집 단계 [2단계]

〈화면 3〉은 특허검색 결과 분석대상으로 선택된 특허 데이터의 편집화면으로, 사용자는 이 화면에서 출원인, 기술분류, 기술요소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분석

〈화면 3〉 데이터 편집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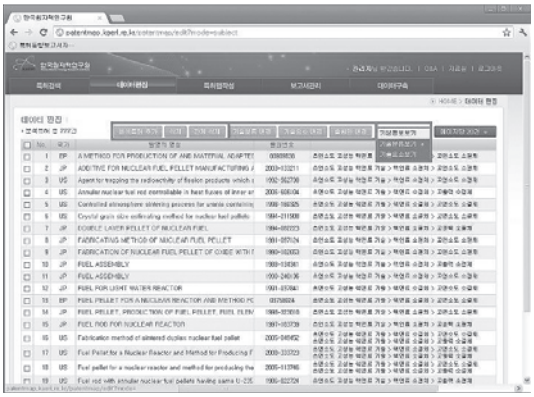

대상으로 선정된 하나 이상의 특허를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도 있다.

특허맵 생성 단계 [3단계]

〈화면 4〉는 데이터 편집을 완료한 후 '특허맵 작성' 버튼을 누르면 나타나는 단위 특허맵 작성화면으로, 기본분석, 심층분석 및 공백기술분석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다. 여기에서 각각의 단위 특허맵에 대한 견본을 보기 위해서는 해당 단위 특허맵의 '보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그래프와 그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다.

〈화면 4〉 특허맵 작성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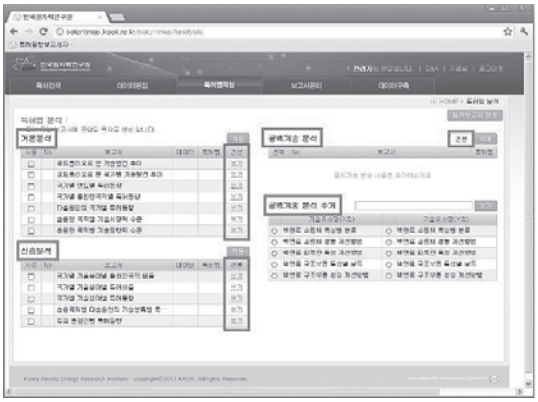

분석대상 특허들을 대상으로 한 실제 단위 특허맵의 생성방법은 기본분석과 심층분석이 동일하다. 즉 하나 이상의 단위 특허맵을 체크한 후 '적용' 버튼을 누르면 〈화면 5〉와 같이 곧바로 해당 특허맵이 자동으로 생성된다. 자동 생성된 특허맵을 보려면 해당 특허맵의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되고, 해당 특허맵의 분석 데이터를 보려면 해당 특허맵 데이터의 '다운' 버튼을 클릭하면 엑셀파일로 된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다.

〈화면 6〉은 위키(Wiki) 형식으로 실제 생성된 단위 특허맵의 사례로, 차트 이미지와 그에 대응하는 설명 예시문이 템플릿 형태로 제공된다. 여기에서 설명 예시문을 클릭하면

〈화면 5〉 특허맵 생성 화면

편집모드로 전환되는데, 이때 해당 차트 이미지와 대응되는 설명 예시문을 보면서 용이하게 수정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분석 데이터까지도 확인하여 수정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해당되는 차트 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다.

〈화면 8〉 공백기술맵 예시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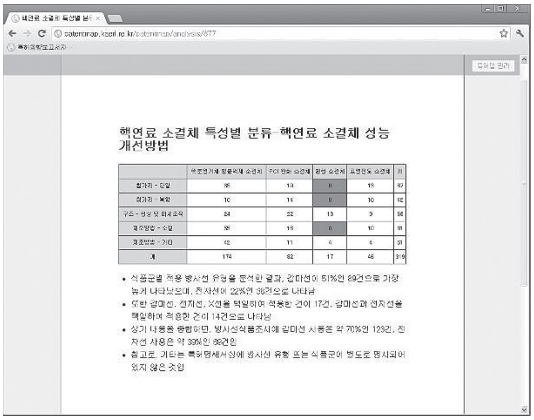

이상에서와 같이 단위 특허맵의 생성 및 수정이 완료되면, 〈화면 5〉의 화면에서 '보고서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 9〉와 같은 보고서 생성화면이 나타난다. 이때 보고서명을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보고서가 자동 생성되는데, 보고서는 개요, 동향분석, 심층분석, 결론 및 시사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면 10〉은 등록된 보고서의 관리 화면으로, 보고서명을 클릭하면 자동 생성된 보고서 전체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훈글이나 MS-Word 형식으로 출력, 저장 및 반출할 수 있으므로,

〈화면 6〉 생성된 특허맵 예시글

〈화면 7〉 특허맵 예시글 수정 예

한편, 공백기술맵은 〈화면 5〉에서 '기술요소(X축)'과 '기술요소(Y축)'을 각각 하나씩 체크한 후 '추가' 버튼을 누르면 해당 맵이 자동으로 생성된다. 〈화면 8〉은 자동 생성된 공백기술맵의 한 예로, 공백기술맵의 제목과 설명 예시문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할 수 있다. 참고로 〈화면 8〉에서 0 또는 숫자가 낮으면 그 기술분야는 특허활동이 거의 없는 공백기술분야라는 의미이고, 숫자가 높으면 그 기술분야의 특허활동이 높다는 의미를 지닌다.

〈화면 9〉 보고서 생성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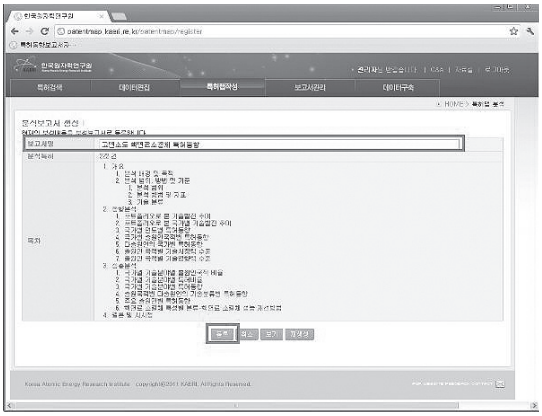

〈화면 10〉 보고서 관리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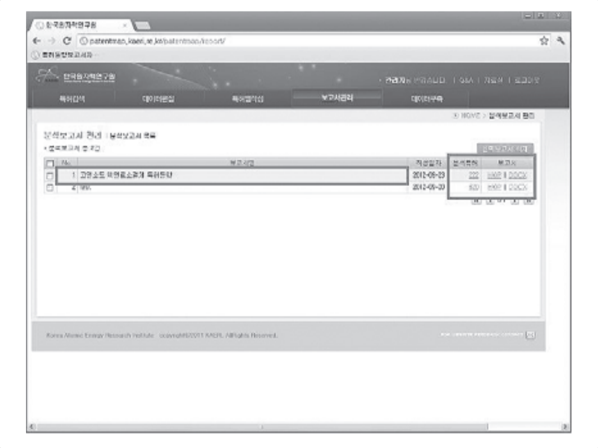

사용자 편의에 따라 수정 또는 편집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글을 마치며

원자력(연)에서 개발·운영 중인 특허동향분석 보고서 자동생성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존 시스템들은 일반 특허검색시스템을 통해 검색된 즉 가공되지 않은 raw-data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종 데이터를 가공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반해 이 시스템은 특허맵 작성시 사용된 가공된 특허데이터를 사용하므로 데이터 가공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둘째, 기존 시스템들은 특허동향 분석결과를 단지 그래프로만 보여주기 때문에 특허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용자들은 각각의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해서 보고서를 만드는지 그 과정을 알기 어려웠다. 이에 반해 이 시스템은 각 단위 특허맵마다 그래프와 그에 대응되는 예시자료는 물론 전체 보고서에 대해서도 템플릿 형태로 제공하고 있어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 연구자들도 보다 쉽고 빠르게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셋째, 기존 시스템들은 특허검색에서 데이터 가공을 거쳐 보고서를 만들기까지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해서 특허전문가들도 보고서를 만들려면 수개월씩 소요된다. 이에 반해 이 시스템은 그 구성이 매우 단순하고 가공된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도 빠르면 불과 3~4시간이면 특허동향분석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다.

아울러 원자력(연)에서 개발·운영 중인 특허동향분석 보고서 자동생성 시스템의 기대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나 기관차원에서 특허맵 작성시 활용된 고품질의 정제된 특허데이터를 그냥 사장시키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고, 그에 따라 인력과 비용 낭비를 크게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둘째, 이 시스템을 통해서 특허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용자들도 보다 쉽고 빠르게 특허동향분석 보고서 작성·활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기대효과라 할 수 있다.

셋째, 실제 특허맵 작성기관인 각 특허사무소에 대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특허맵 작성의 표준화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2. 11

유 재 복 팀장
한국원자력연구원 지식재산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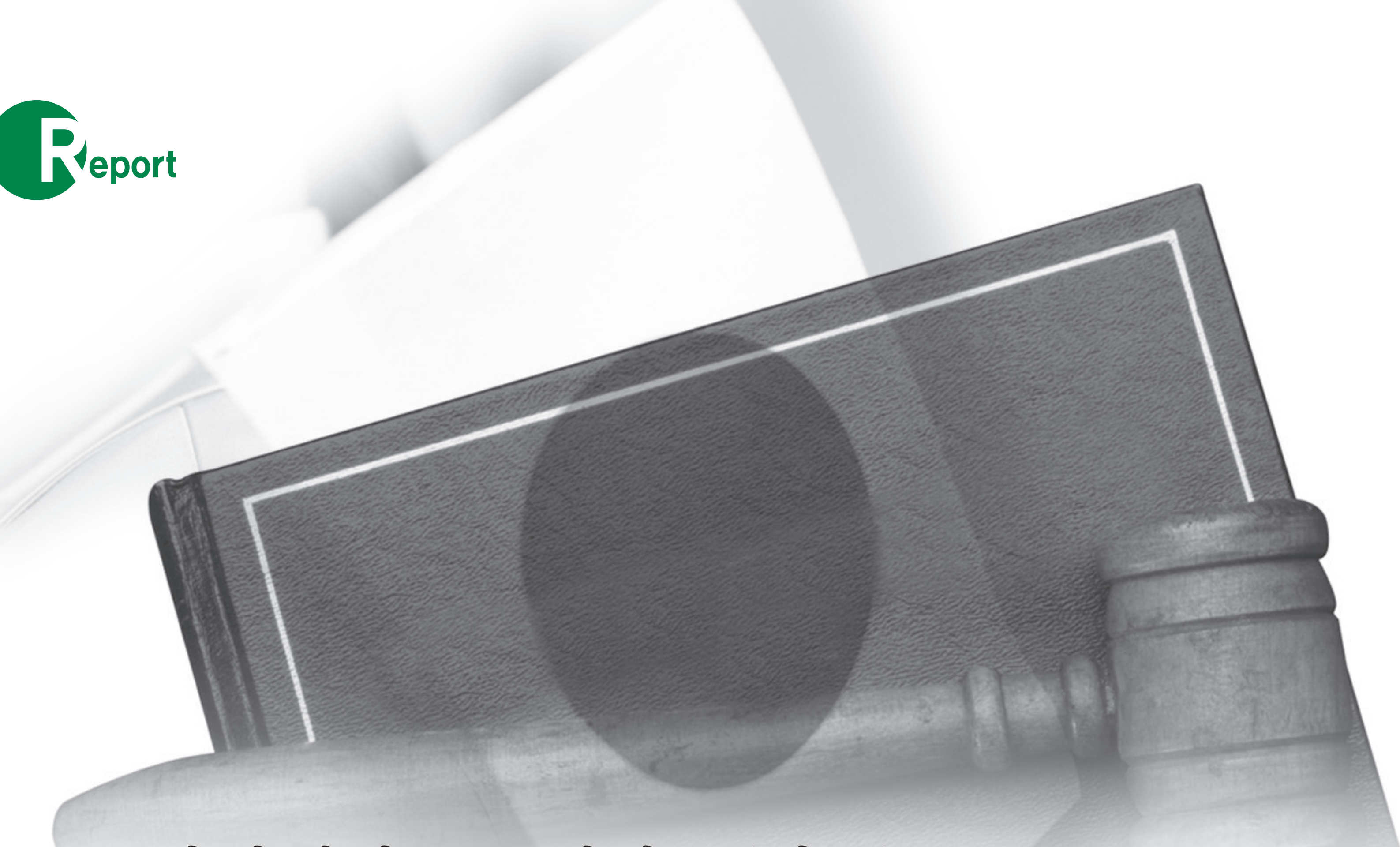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일본) 심결취소 판례 소개

판례 발명의 효과가 주지인 경우 일부 구성요소의 차이는 설계변경
평성17년(행케) 제10290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2005년7월7일
출원번호 실원평 3-4873 (문어 스팀 가공장치)

쟁점

본건고안과 인용고안간의 열탕탱크의 설치 위치의 차이가 설계변경인지 여부

판결 요지

본건고안의 문어 스팀 가공장치는 스팀처리와 열탕처리를 결합시키는 것에 의해 문어의 빛깔을 선명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알카리액에 의한 열탕처리에 의해 문어의 빛깔을 선명하게 한다는 종래부터 알려진 주지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므로, 열탕조를 증기가마의 입구부근, 중간부근, 출구부근 중에 어느 위치에 설치하여 열탕처리를 행하는 것은 문어의 증기 가공처리의 순서에 부응하여 당업자가 자유롭게 설계하여 얻을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

이건발명 기술적 요지

【청구항 1】터널식 증기 가마입구와 출구 사이에 엔드리스 컨베이어를 수평방향으로 주행 자유롭도록 하고, 상기 컨베이어의 왕복로의 도중에 열탕조를 부설하며, 상기 열탕조에 처리액의 공급부 및 액을 가열하는 가열기를 설치하고, 상기 왕복로가 열탕조내의 액중을 통과하도록 컨베이어를 안내하는 가이드를 설치하며, 상기 터널식 증기 가마내의 출구부근에 상기 열탕조를 설치한 문어 스팀 가공장치.

[이건발명의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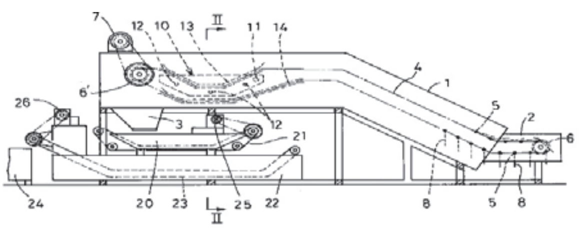

인용발명1의 기술적 요지

본체의 입구와 출구간에 무단 컨베이어를 수평방향으로 주행자재하게 설치되고, 상기 컨베이어의 왕복로의 도중에 열탕실이 설치되며, 상기 열탕실에는 예열 온수 입구 및 증기파이프가 구비되고, 상기 왕복로가 저탕실 내의 액중을 통과하도록 컨베이어를 안내하는 태크업을 설치하며, 상기 본체내을 분할판에 의해 구분하고, 입구측에 1차 증강실을, 중간에는 열탕실을, 출구측에는 2차 증강실을 설치한 취반기.

이건발명과 인용발명1간의 동일점과 차이점

동일점

입구와 출구간에 엔드리스 컨베이어를 수평방향으로 주행 가능하도록 설치하고 상기 컨베이어 왕복로의 도중에 열탕조를 설치하며, 상기 열탕조에는 처리액의 공급부 및 액을 가열하는 가열기를 구비하고, 상기 왕복로가 열탕조 내의 액중내로 통과할 수 있도록 컨베이어를 안내하는 가이드를 설치한 장치

차이점

이건발명은 스팀가마의 출구부근에 열탕조를 설치한 문어 스팀가공장치인데 비하여 인용발명1은 스팀가마의 중간부분에 열탕조를 설치한 취반기라는 점에서 양자간 차이가 있다.

판례의 개요

(사건의 경위)

2003년6월25일 무효심판청구
2003년12월16일 심결 (진보성 있음)
2005년7월7일 판결 (진보성 없음)

(심판소 판단)

인용발명1 내지 인용발명3에는 터널식 스팀가마의 출구부근에 열탕조를 설치한 것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인용발명들은 문어 스팀가공 장치가 아니고, 취반기 또는 어묵 스팀가공장치로 그 용도도 차이가 있다.

게다가 이건발명은 명세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증기가마 입구에 투입된 문어는 증기가마를 통과한 후 운송 왕복로의 말단에 설치된 열탕조를 통과해 더욱더 색깔이 선명하게 된다."라는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열탕조를 가마내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치전체를 컴팩트하게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심판청구인이 주장하는 "스팀공정 후에 알카리 등의 처리액을 사용, 열탕처리 공정을 실시하여 문어의 선명도를 높이는 것은 이건발명의 등록이전부터 주지관용기술

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심판청구인이 주지관용기술로 제출한 자료에는 문어의 열탕처리 또는 스팀처리 중 어느 한쪽의 단독 처리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고, 스팀처리 후에 연속하여 열탕처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기 주장은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적재산고등 재판소의 판단)

이건발명과 인용발명1의 차이점은 열탕조의 설치위치의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건발명과 인용발명들은 터널식 스팀장치의 내부에 열탕조를 설치하여 1개의 장치 안에서 스팀처리와 열탕처리를 모두 수행하는 식품가공기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심결에서는 이건고안은 열탕조를 스팀가마의 내부에 설치하는 것에 의해 장치의 컴팩트화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스팀가마내에 열탕조를 설치하는 것은 당업자이면 극히 용이하게 달성이 가능하다.

또한, 이건 문어 스팀 가공장치는 스팀처리와 열탕처리를 결합시키는 것에 의해 문어의 빛깔을 선명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알카리액에 의한 열탕처리에 의해 문어의 빛깔을 선명하게 한다는 종래부터 알려진 주지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므로, 열탕조를 증기가마의 입구부근, 중간부근, 출구부근 중에 어느 위치에 설치하여 열탕처리를 행하는 것은 문어의 증기 가공처리의 순서에 부응하여 당업자가 자유롭게 설계하여 얻을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

판례의 검토

이건발명과 인용발명간에 구성요소의 일부 차이가 있어도 그에 따른 작용효과가 현저한 것이 없고, 이건발명의 작용효과가 주지관용기술과 특별한 차이가 없을 때 이건발명과 인용발명간에 일부 구성요소의 차이가 있어도 이건발명은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일본) 지적재산고등 재판소는 판시하고 있다. 2012. 11

황 동 율 책임심사관
특허청 공조기계심사과

Information

세계는 지금 _ 세계 지식재산권 동향 소식
여기서 잠깐 _ 특허 Q&A
KIPO NEWS _ 특허청 소식
여기서 잠깐 _ 독자마당
KIPA NEWS _ 한국발명진흥회 행사 및 소식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된 우리나라 대표 특산품
발명만화 _ 몰래발명이야기 – 라식수술
건강하게 삽시다 _ 오래 살려면 뇌도 단련시켜야 한다
여기서 잠깐 _ 문화산책

세계는 지금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에어백 위조 상품 밀매업자 체포

지난 10월 15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에어백 위조 상품 단속을 통해 디트로이트에 거주하는 Samar Ayoub과 Hussein Jomaa 두 명을 에어백 위조 상품 밀매 혐의로 체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미국 이민관세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은 위조 상품 밀매의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Hussein Jomaa는 서류상 디트로이트에 소재한 「Eagle Auto」의 총지배인으로서 아프리카행 차량들에 에어백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말에 Samar Ayoub로부터 자동차 기업인 Honda의 상표를 부착한 에어백 위조 상품 등을 구매했다. 한편 Samar Ayoub는 해당 에어백 위조 상품 등을 중국의 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 사건과 관련해 Barbara McQuade 검사는 에어백 등과 같은 자동차 위조 상품은 지식재산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또한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안전상의 위험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산하 고속도로 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은 지난 10월 10일에 차량 소유주 및 정비사들에게 에어백 위조 상품의 위험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소비자 안전주의보(consumer safety advisory)를 발령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은 에어백 위조 상품들이 주요 자동차 회사의 기장 및 상표를 달고 있는 등 인증을 받은 에어백과 거의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험 결과 에어백의 작동 불량은 물론 에어백 작동시 금속 파편이 방출되는 등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출처 http://www.ice.gov

미국 소니, Bridgestone 등을 상대로 지식재산침해 소송 제기

지난 9월 11일, 미국 Sony Computer Entertainment America(이하 'Sony')는 미국 Bridgestone and Wildcat Creek(이하 'Bridgestone') 및 Bridgestone 광고에 출연한 배우 Jerry Lambert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지식재산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Sony는 자사의 게임기인 「PlayStation」 광고에 출연했던 Jerry Lambert가 Bridgestone의 자동차 타이어 관련 광고에 출연해 경쟁 기업의 게임기인 「Nintendo Wii」를 즐기는 장면을 연출한 것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Sony사에게 위해를 끼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Sony는 상표권 침해 및 부정사용(misappropriation), 계약 관계의 불법 방해(tortious interference with a contractual relationship),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Bridgestone과 Jerry Ramber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Sony는 지난 2010년에 자사의 게임기인 「PlayStation」을 홍보하면서 「Kevin Butler」라는 가상의 인물을 Sony의 부사장으로 설정해 광고에 등장시켰으며, Jerry Lambert는 이 광고에서 「Kevin Butler」의 역할을 맡은 바 있다. Sony의 「PlayStation」 광고와 광고의 등장인물인 「Kevin Butler」는 대중으로부터 인기를 얻었으며, Sony는 「Kevin Butler」라는 캐릭터가 자사의 지식재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Jerry Lambert는 지난 2012년 9월에 자동차 타이어를 생산 · 판매하는 기업인 Bridgestone의 광고에 출연

11

해 Sony의 「PlayStation」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게임기인 「Nintendo Wii」를 즐기는 장면을 연출한 바 있다.

Sony가 지식재산 침해 소송을 제기한 이후 Bridgestone은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문제가 된 광고를 중단한 상태다.

출처 http://www.dailymail.co.uk

일본 증권시장, 지식재산 관련주에 대한 관심 증대

지난 10월 15일, 「NSJ日本証券新聞」 인터넷版은 야마나카신야(山中伸弥) 교수가 노벨상을 수상자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바이오 관련주 이외에도 특허를 보유한 지식재산 관련주에 대한 일본 증권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NSJ日本証券新聞」은 또한 국제지식재산권거래소(Intellectual Property Exchange International, IPXI)가 2012년 가을에 미국 시카고에서 거래를 시작할 계획이며, 향후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유한 종목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IPXI는 기업이 주식시장에 기업공개를 하듯이 특허기술을 상장하는 방식을 통해 특허를 주식처럼 공식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거래소인데, 회원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Sony의 미국 자회사, Ford의 자회사, 시카고 대학 등 여러 기업 및 대학들이 현재 가입되어 있다.

특허분석 전문기업인 Patent Result가 집계한 「2012년 미국 특허자산 규모 순위」에서 Panasonic, Canon 등 5개의 일본 기업들이 상위 10대 기업에 속한 것으로 나타나 미국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atent Result가 집계한 미국 특허자산 규모 상위 10대 기업〉

순위	기업명	특허자산규모(Point)
1	IBM	140,507
2	삼성전자	108,974
3	파나소닉	74,425
4	캐논	74,157
5	도시바	73,715
6	마이크로소프트	72,304
7	소니	62,461
8	LG엘렉트로닉스	53,775
9	GE	51,652
10	세이코 엡슨	44,244

이러한 지식재산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도쿄증권은 올해부터 특허에 관한 「테마종목 리스트」 발표를 시작했다. 「테마종목 리스트」는 증권거래소 2부 종목과 마더스(MOTHERS) 시장에 속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허가치 관점으로 유망종목을 선택한 리스트다.

* 1999년 개장한 마더스 시장(Market of the High-growing and Emerging Stocks)은 고성장이 예상되는 주식의 거래를 위해 도쿄증권거래소가 개설한 것으로서 일본 신생기업들이 거래되는 주식 시장임

출처 http://www.nsjournal.jp

세계는 지금

일본 특허청, 신임 특허청장 취임사 소개

지난 10월 1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 9월 19일자로 청장으로 취임한 후카노히로유키 신임 특허청장의 취임사를 JPO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후카노 청장은 일본 기업의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글로벌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업전략과 일체화된 지식재산전략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일본의 경제는 신흥국의 등장과 더불어 엔고현상 및 에너지 문제 등 중요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므로, 어려운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본 기업은 지식재산을 토대로 제품 및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여 국가경제의 활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JPO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한 지식재산정책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중점 시책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심사기간 단축) 2013년 세계최고 수준인 11개월의 심사대기시간을 달성하기 위하여 심사체제 강화 및 선행기술 조사의 아웃소싱 확충 등 신속하고 명확한 권리부여에 주력할 예정
- (심사업무의 글로벌화 추진) 해외 진출 기업의 글로벌 지식재산 매니지먼트 강화를 위해 국제적인 제도조화를 이룰 것이며, 세계에서 통용되는 안정된 권리 설정을 위해 심사업무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고, 앞으로 JPO의 심사결과를 해외에 전달하여 일본 기업의 지식재산권 권리 취득을 지원해 나갈 예정
- (디자인 보호제도 개선) 각국의 출원절차를 일괄해서 수행할 수 있는 헤이그협정의 가맹 및 화면디자인 보호 확충을 포함한 디자인법 개정 등의 구체적인 논점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
- (상표제도 개선) 동작, 소리, 냄새 등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상표를 기업 브랜드로서 보호할 수 있도록 법 ·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
- (중소기업 종합지원 대책) 일본의 혁신기반을 지탱하는 중소기업이 모방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며 적극적인 해외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지원체제 강화 및 기업요구 분석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확충할 예정

출처 http://www.jpo.go.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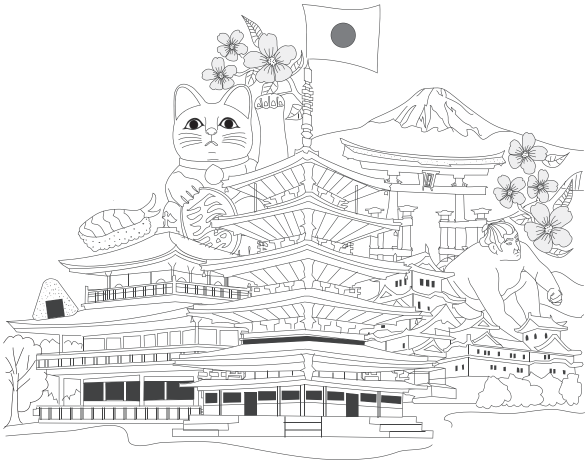

중국 과학일보, 지난 10년간 중국의 과학기술 성과 발표

지난 10월 10일 중국 과학일보는 중국의 지난 10년간 과학기술 관련 발전 수치들을 검토하고, 중국의 과학기술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중국 과학기술발전 전략연구원의 「국가혁신지수 2011」에 따르면,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지수는 2001년 37위에서 20위로 상승하였으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의 과학기술 진보율은 5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과학기술 인력은 2001년 2,600만 명에서 2011년 6,200만 명으로 급증하여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 인력은 2001년 96만 명이었으나, 2011년 28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연구개발 인력의 수준도 함께 향상되어 2009년 연구개발 기관에 종사하는 박사 학위 소지자는 9만 2천명, 석사 학위 소지자는 23만 5천명에 이른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증가해, 2001년 중국 정부가 지원한 과학기술 관련 투자비용은 703억 위안에서 2011년 4,900억 위안으로 급증하였으며, 지난 10년간 중국에서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지출액은 1,042억 위안에서 8,610억 위안으로 증가했다. 2011년 중국의 R&D 경비 100만 달러당 자국민 특허 취득 건수는 2001년보다 2.1배 증가한 1.6건을 기록하였고, IP5 중 R&D 특허취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에 수록된 중국 논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3.6%에서 2010년 8.6%로 증가했다.

한편 지난 10년간 국가 과학기술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11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2006~2010) 중앙정부가 국가 과학기술 계획에 배정한 사업은 51,904건, 지원금은 932억 2,800만 위안,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투자비용은 1,186억 4천만 위안에 이른다.

출처 http://www.stdaily.com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역별 지식재산침해 단속 주요사례 소개

지난 9월 1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2년 중국 특허 사업발전 전략추진 계획」 중 지방 지식재산권국의 지식재산권침해 단속 업무를 통해 적발된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했다.

- 광저우시는 Swarovski의 디자인을 모방한 인조 다이아몬드 제품 300여개를 적발함
- 멘 시는 펑구터우취(丰谷头曲)주류 외관 디자인 침해 사건을 신속하게 조정함
- 광둥성은 광저우 수출상품 교역회에 전시한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들을 철수시킴
- 우한시는 난창(南昌)시 지식재산권국과 협력하여 과학기술 기업의 특허 사칭을 적발 체포함

*SIPO는 「국가 특허 전략」의 세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2011년 11월 9일에 특허품질향상, 특허를 통한 중점지역발전 지원 등 10대 분야의 중점계획을 선정한 「2012년 중국특허사업 발전 전략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동 발표에 따르면 2011년 SIPO 지식재산권 신고접수시스템에 접수된 특허침해 건수는 총 3,014건으로 2010년 1,823건에서 65.5% 증가했다.

한편 SIPO 톈리푸 국장은 지식재산권침해 단속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 지식재산권침해 단속업무 역량 강화는 중국의 경제성장 모델 전환 추진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며, 지식재산권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함
- 지방 지식재산권국은 전국의 특허보호 거점기지의 소통·협력을 강화해 지식재산권침해 단속업무 강화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출처 http://www.nipso.cn

세계는 지금

파라과이 세관 등, 3,400만 달러 상당의 위조 상품 압수

지난 10월 16일, 파라과이 세관과 기타 파라과이 법집행 당국들은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3,400만 달러 상당의 위조 상품을 압수했다.

파라과이 세관 등은 파라과이 아순시온에 소재한 실비오 페티로시 국제공항에서 위조 상품들이 밀수출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단속 활동을 벌였다. 단속 결과, 범죄 조직이 위조 상품을 해외로 밀수출하기 위해 시도 중이었으며 그 위조 상품들은 미국으로 밀수출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압수한 위조 상품에는 「Patek Philippe」, 「Tag Heuer」, 「Tissot」, 「Bulgari」 등 다양한 브랜드를 위조한 시계들 및 삼성전자 브랜드를 위조한 약 12,500개의 휴대폰들이 포함됐다.

파라과이 세관 등의 이번 단속 활동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과의 공조를 통해 이루어졌다. 파라과이 세관은 지난 9월 26일에도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하여 우루과이로부터 파라과이 시우닷 델 에스떼로 이송되는 수송 화물들을 수색해 위조 상품들을 압수한 바 있다. 동 단속 활동에서 압수된 위조 상품들은 「XBox」, 「PlayStation」 등과 같은 게임기로서 약 74만 달러에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라과이에서의 위조 상품 단속 성과와 관련해 국토안보수사국의 Raul Aguilar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 담당관은 국제 세관 당국 및 국경 보호기관들과의 협력 관계가 지식재산 절도를 척결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출처 http://www.ice.gov

싱가포르 특허청, 한국 특허청과 지식재산 협력 양해각서 체결 발표

지난 10월 9일, 싱가포르 특허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IPOS)은 지난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0차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총회에서 한국 특허청(KIPO)과 양국의 지식재산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 및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발표했다.

지식재산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는 양국의 지식재산 정보 및 사례 공유를 통해 지식재산권 관리업무와 지식재산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양 기관은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심사된 특허 결과를 참고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특허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PH는 PPH 협력을 체결한 각 국가에서 특허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신속하게 특허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싱가포르는 2009년 미국특허청(USPTO) 및 일본 특허청(JPO)과 PPH를 체결하였으며, 한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3번째로 싱가포르와 PPH 협력을 체결한 국가가 되었음

** IPOS와 KIPO가 체결한 PPH 양해각서는 오는 2013년 1월 1일에 발효할 예정임

싱가포르의 Tan Yih San 청장은 "특허를 통해 양국의 과학기술 발전 및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싱가포르가 아시아의 지식재산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 한 단계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출처 tp://www.ag-ip-news.com

자료제공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특허 Q&A

Q. 연차등록료 납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의 연차등록료 납부란 특허(등록)권의 설정등록일(97.7.1 이전 설정등록 된 특허 · 실용신안은 출원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도(단, 선등록 실용신안의 2~3년차분은 설정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연차분을 당해년도 개시전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특허(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기간경과 후 6월 이내에 추가납부 가능 (1개월이내에는 120%, 2~3개월이내에는 130%, 4~6개월이내에는 150%의 금액)
- 이해관계인도 권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특허(등록)료 납부 가능
- 상기 추납기간이 경과한 때는 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이 본래의 납부기간의 만료시에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봄

A. 2005년 9월 1일부터는 실시중인 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의 연차등록료 납부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정상납부기간에 납부할 특허(등록)료의 3배를 납부하고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KIPO

50억대 짝퉁 명품 액세서리 제조업자 적발

샤넬, 디올 등 유명상표를 도용, 속칭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1만여점(정품시가 52억 원)을 제조해 남대문시장 등 도매상에 유통시켜온 제조 · 판매업자가 검거됐다.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경찰대 설립 이후 최초로 샤넬, 디올 등의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 목걸이, 귀걸이 등 액세서리용 귀금속을 주조(캐스팅)하여 제조 · 유통시킨 혐의로 원 모씨(38세)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1월 1일 밝혔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10월 29일 성남시의 제조공장에서 보관중이던 샤넬, 디올 등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1만여점(정품싯가 52억원)과 주조(캐스팅)용 금형 140여개 등을 압수했다

조사결과, 구속된 제조업자 원 모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성남시 금광동 소재 대로변 건물 지하에 비밀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샤넬 등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38만여점을 제조하여 서울 남대문과 동대문 등지의 도매상에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판현기 대장은 "주범 원씨가 10개월여 동안 남대문시장 도매상들과 지속적으로 거래해 38만여점을 유통시킨 점으로 볼 때 '짝퉁' 액세서리 유통규모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이들로부터 물건을 구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도매상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특히 이번에 검거한 사건처럼 "앞으로 대량의 '짝퉁' 제조 · 유통업자를 뿌리 뽑는데 수사력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유명 아웃도어 의류도 '짝퉁' 주의!

특허청은 지난 10월 15일 가을 단풍 나들이철을 맞아 아웃도어 의류에 대한 짝퉁상품 집중수사를 통해 위조상표 제조 · 유통 업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2007년 1조원에서 최근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국내 아웃도어 시장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주로 해외 명품 브랜드 상표를 베껴 팔던 '짝퉁' 의류시장이 이젠 국내 유명브랜드 중심의 아웃도어 제품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적발된 의류 완제품 총 8천6백여점 중 5천여점은 '블랙야크', '네파', '코오롱 스포츠' 등 국내 유명 브랜드가 많았으며 정품싯가 7억원으로 확인됐다.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이병하 대전사무소장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과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블랙야크', '네파', '아디다스스포츠' 등의 짝퉁 상품 판매가 늘고 있으나 대규모로 거래되는 경우가 드물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에서 주로 생산하여 들여오던 '짝퉁 제품'이 세관단속이 심해지고 현지 생산 인건비 상승으로 다시 국내에서 생산하는 불법 제조업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앞장서서 위조상품을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 위조상품제보센터 www.brandpolice.go.kr**
전화 1666-6464

특허전쟁 시대, 女전사가 간다!

지재권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변리사수가 지난 10년간 194명('02년)에서 1,106명('12년)으로 460% 이상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남성 변리사 증가율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이를 반영하듯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 사무소에 근무하는 변리사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3%이며, 특히 화학 · 생명 분야의 경우 절반이 넘는다.

NEWS

지식재산 분야의 주무부처인 특허청에서도 기술심리관, 심판관, 심사관 등의 직무에서 여성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화학 · 생명 분야의 경우 기술전문성을 갖춘 94명의 여성 심사관 또는 심판관들이 여성 특유의 세심함을 강점으로 최신 기술에 대해 엄격하게 특허성을 판단하고 있다.

최근 법률, 의학, 금융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그들의 활약이 커지고 있는 현상은 여성의 고학력화와 우리경제가 지식기반서비스산업으로 전환되면서 전문직 여성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12년 로스쿨 입학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이 약 44%(910명)인 것을 고려하면 향후 지식재산의 창출 및 권리화 단계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을 활용한 기업간 분쟁 및 기술 사업화 분야에까지 여성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와 애플간 세기의 특허 소송을 담당하는 '루시 고' 판사가 한국계 미국인 여성인 것처럼 향후,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다가올 특허전쟁 시대에 지식재산 분야에서 여풍의 힘은 한층 거세질 것이다.

지난 10년간 여성변리사 증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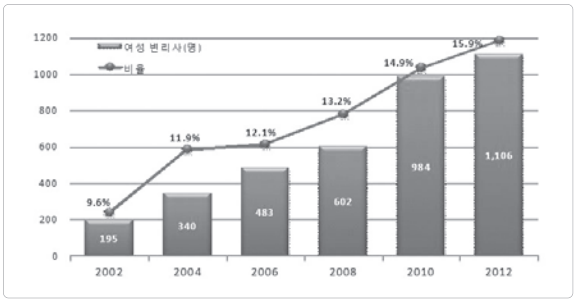

(단위: 명)

년도 / 변리사	'02년	'04년	'06년	'08년	'10년	'12년
남성	1,829	2,528	3,515	3,952	5,601	5,843
여성 (비율, %)	195 (9.6)	340 (11.9)	483 (12.1)	602 (13.2)	984 (14.9)	1,106 (15.9)
전체	2,024	2,868	3,998	4,554	6,585	6,949

〈출처: 특허청, 지식재산주요통계〉

대표 민간기관의 지식재산 업무 여성 종사자

(단위: 명)

	김앤장 법률 사무소		LG화학	
	변리사	화학 · 생명분야	직원	특허분야
전체	173	55	11,264	42
여성 (비율, %)	57 (32.9)	31 (56.4)	1,051 (9.3)	21 (50.0)

〈출처: 김앤장, LG화학〉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에 단국대, 서울대, 부경대 추가 선정

특허청은 제2차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으로 단국대, 서울대, 부경대 3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10월 25일 발표했다.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사업은 지식재산 대중화를 위해 정부가 대학 차원의 교육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 1차로 강원대, 인하대, 전남대 3개 대학이 선정된데 이어 이번에 2차로 3개 대학이 선정됐다. 선정된 대학들은 지식재산 전담교수를 선발해 다양한 지식재산교육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이중 단국대는 당장 내년부터 전체 공대생에게 지식재산교육을 필수화하고, 공대 외 5개 전공분야에도 지식재산교육을 확산하는 등 총 56개 강좌를 통해 지식재산 대중화에 나선다는 계획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단국대는 이를 담당할 지식재산 전담교수를 정년 트랙의 전임교수로 선

발하여 안정적인 교육 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서울대는 대학원생 위주의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을 겸비한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해 특허청이 추진중인 ‘지식재산권 중심의 연구개발전략(IP-R&D)’이 대중화되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부경대는 동남권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지식재산 인재양성 전략과 함께, 이공계 등 지식재산 창출분야의 박사학위 논문을 특허출원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이영대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선도대학은 지식재산교육을 대학에 확산하고 체계화하는데 큰 효과가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선정을 통해 대학의 지식재산 대중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이번에 선정된 대학에 대해 대학별로 매년 1억 5천만 원씩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입는 컴퓨터’ 시대가 왔다

웨어러블 컴퓨터는 차세대 컴퓨터 산업의 핵심으로 여러 산업 분야의 통합을 주도하고, 전통 산업에 IT를 결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사업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웨어러블 컴퓨터는 신체나 의복에 착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컴퓨터를 말한다. 사용자가 이동하면서도 자유자재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형화 또는 경량화한 것이 특징이다. 달린 거리나 소비된 칼로리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운동화나 운동복, 마이크나 카메라를 내장한 안경 등은 일상에서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다.

금년에 구글이 공개한 프로젝트 글래스는 음성명령을 통해 사진을 찍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구글 맵을 사용하거나 전화를 거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도 웨어러블 컴퓨터의 일종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웨어러블 컴퓨터와 관련된 특허출원이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장조사기관인 IMS 리서치의 보고서는 전 세계 웨어러블 컴퓨터 시장규모가 2016년에 60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각종 하드웨어 기기의 소형화 추세에 힘입어 스마트 기기는 향후 웨어러블 컴퓨터의 형태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웨어러블 컴퓨터로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는 편리성을 추구하며, 실시간적인 정보전달에 익숙한 현대인의 욕구에 잘 부합해 향후 관련 특허출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 프로젝트 글래스〉

스마트폰의 효과, ‘게임상표’ 출원 급증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힘입어 게임과 관련된 상표출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게임관련 출원건수가 ‘08년 183건, ‘09년 213건, ‘10년 246건, ‘11년 276건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

였지만, 올 9월말 현재 305건이 출원돼 작년 동기 대비 58.0%나 대폭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게임수요의 증가는 게임회사들의 새로운 모바일 게임 개발의 확대를 불러와 게임관련 출원건수의 급증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업체의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금년 9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넥슨코리아' 의 출원건수는 18건에서 39건으로, '게임빌' 은 10건에서 21건으로 증가했고, 최근 인기 있는 모바일 게임 '애니팡' 을 출시한 '선데이토즈' 는 6건에서 20건으로 크게 늘어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게임업체들은 모바일 게임 사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게임 캐릭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로 사업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요즘 인기있는 캐릭터인 '앵그리버드' 나 '메이플스토리' 의 유명세는 완구, 음료, 과자 등에 이르기까지 부가수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화의 사례는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게임관련 캐릭터의 상표출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마트폰용 파우치로 로열티 1500만원 받은 대학생 이승희씨

대학생 디자이너가 스마트폰용 파우치 디자인으로 1,500만원의 로열티 수입을 올려 화제가 됐다.

특허청의「2011 D2B(Design-to-Business) 디자인페어」에서 대상을 받은 (주)신지모루의 스마트폰용 파우치가 10개월만에 80,000여 개가 판매되어 전체 1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으며, 디자이너에게는 1,500만원의 로열티가 지급됐다.

스마트폰용 파우치는 스마트폰 뒷면에 주머니를 만들어 교통카드, 신용카드 및 이어폰 등을 수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것으로 뛰어난 신축성과 다양한 색상이 특징이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시 지갑에서 교통카드를 빼야하는 불편함을 없애 큰 호응을 얻었다.

다양한 색상의 파우치

교통카드 파우치로 활용

뛰어난 신축성

디자이너인 대구카톨릭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이승희씨는 "스마트폰용 파우치 디자인의 로열티로 받은 돈은 1, 2학기 등록금과 생활비로 활용하여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 드렸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졸업 후에 "(주)신지모루와 같이 디자인의 가치와 권리를 인정해주는 기업과 거래하는 디자인기업을 구상중이다"라고 밝혔다.

KIPO

한편 「D2B 디자인페어」는 디자인을 기업에 제공하고 디자인권을 통해 로열티를 확보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모전으로서, 기업에서 필요한 디자인을 문제형태로 출제하여 심사 · 시상 · 라이선스까지의 모든 과정에 기업이 참여해 상품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 세계 어린이의 발명 선생님이 된 뽀로로!

아이들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우리나라 인기 캐릭터 '뽀로로'가 이번에는 전 세계 어린이들의 발명 선생님이 됐다.

특허청은 어린이가 발명과 지식재산권을 보다 재밌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뽀로로'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을 제작 ·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재권 교육용 뽀로로 애니메이션 'Getting Creative with Pororo'는 2010년부터 약 3년 동안 특허청,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오콘(뽀로로 제작사)이 합작하여 만든 교육자료다.

이 애니메이션은 어린이 눈높이에서 '발명이 재밌다'라는 인식과 함께 타인의 창작물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콘텐츠로 '발명왕 뽀로로', '발명대회에 간 뽀로로', '상표를 만든 뽀로로'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허청장은 "우리나라 토종 캐릭터인 뽀로로가 전 세계 무대에서 미래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발명 선생님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지식재산 세계 4위 국가인 우리나라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Getting Creative with Pororo' 애니메이션은 현재 한국어와 영어 버전으로 제작되었으며 WIPO를 통해 각국 특허청 및 지식재산 유관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Getting Creative with Pororo'를 10월 중순부터 특허청 영문홈페이지(www.kipo.go.kr/en) 및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www.ipacademy.net)에서 각각 영문 및 국문 버전으로 무료 서비스할 예정이다. 단,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공 특허청

독자마당

발명특허를 보신 후 가장 좋았던 내용과
개선해야 할 내용을 적어서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더 나은 매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면에 게재되신 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정답을 적어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독자의견을 적어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보내드립니다.

▶ 정답 보내실 곳
smp@kipa.org

QUIZ

1.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 초창기에 광고 대상을 밝히지 않고 소비자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기법은?

2. 미 소비자연맹이 1936년부터 발간한 월간지로서 아이폰4의 수신결함이 하드웨어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자 직후 애플사가 아이폰4의 수신결함을 인정하고 범퍼케이스를 무상지급하기로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3. 칸영화제 '주목할만한 시선'에서 대상을 거느린 영화 아리랑의 감독으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세계 3대 영화제에서 모두 수상한 영화감독은?

독자의견

▶ **전선희 독자** _ 10월호 '비아그라, 상표는 살아있다'와 '뽀통령을 호위하라'를 흥미롭게 봤습니다. 지식재산권 하면 아무래도 특허의 이미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마련인데, 상표와 디자인권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권리기간이 한정된 특허, 실용신안 등에 비해 무한한 권리기간을 가질 수 있는 상표를 통해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보호의 울타리를 칠 수 있다는 점을 향후 지식재산권 관리에 전략적으로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내 캐릭터들의 눈부신 활약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지재권 현황을 보면서 애써 개발한 우리의 기술, 우리의 지식재산이 더욱 잘 보호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강호우 독자** _ 평소 궁금하기만 했던 발명이야기를 만화로 풀어서 설명하니 이해도 빠르고 아이와 함께 보는 재미가 대단합니다. 특히 이번호의 '몰래발명이야기–헤어스프레이'도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구성으로 많은 이야기를 기대합니다.

▶ **최지호 독자** _ 애플과 삼성의 소송에서 봐왔듯이, 최근에는 특허뿐만 아니라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것이 부각되어 왔습니다. 그에 맞춰 '비아그라, 상표는 살아있다' 와 '특명 뽀통령을 호위하라'는 상표와 디자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줬고, 상표 및 디자인이 중요하며 관리가 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줬습니다. 향후 영업비밀 중 원본증명 서비스에 관한 내용도 다뤄주세요.

10월호 퀴즈 정답

1. 프리츠커 상
2. 엄마를 부탁해
3. 그랜드슬램

퀴즈 정답자

전선희 서울시 중구 저동
강호우 인천시 남동구 간석2동
최지호 대전시 서구 만년동

우리회 창립 39주년 기념식 개최

핵심가치 선포 및 장기근속직원 공로패 수여

우리회는 창립 39주년(10월 18일)을 맞아 지난 10월 16일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는 핵심가치 선포 및 장기근속(10년, 20년) 직원 공로패 수여식이 진행됐다.

〈장기근속 공로패 수상자 명단〉

근속20년	홍성일(지역지식재산팀장)
	이두성(총무팀장)
	허동욱(발명진흥팀 차장)
	이민우(총무팀 과장)
	김재권(사업화지원팀 과장)
근속10년	이혜영(지식재산인력양성팀 과장)

먼저 보완 · 개선된 핵심가치인 '도전과 창의' '고객' '전문성' '투명성'을 임직원들의 행동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지식재산의 가치를 최고로 만들어주는 세계적 선도기관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장기근속 직원에게 공포패가 수여됐다.

조은영 부회장은 "우리회 성장을 위해 애쓴 장기근속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현장에서 핵심가치를 잘 실천해 한국발명진흥회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명계-연구계 특허기술 사업화 및 정보화 위해 손잡아

우리회-프론티어연구성과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최근 기술사업화를 염두에 둔 R&BD (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의 중요성이 강조된 가운데, 우리회가 프론티어연구성과지원센터와 지난 11월 5일 한국발명진흥회 19층 회의실에서 특허기술 사업화 촉진 및 정보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기초 · 원천 연구성과의 실용화 지원사업 협력, 해외특허지원 대상 기술현황 DB정보 공유, 특허기술 가치평가 및 특허기술 사업화 상호연계 지원, 전산인프라 활용 및 정보화사업 협력 등이다.

이에 따라 특허기술 사업화에 강점이 있는 우리회는 프론티어연구성과지원센터의 기초 · 원천 우수 연구성과를 기술개발로 상용화(Commercialization)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외특허료지원사업 중복지원 사전 방지를 시작으로 사업관리시스템 · 연구성과관리시스템간 특허정보 DB 연계, 전산 인프라 공유 등을 통해 양 기관의 정보화 경쟁력도 강화될 예정이다.

조은영 부회장은 "우리가 보유한 특허기술 가치평가 및 사업화 지원 서비스를 통해 기초 · 원천기술 연구성과가 기업의 수요와 연계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며, "시스템 및 DB 구축 협력으로 상호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IPA

글로벌 CEO로의 꿈을 키우는 '글로벌 인재 포럼 2012' 개최

우리회, 정규세션 진행 및 글로벌 ceo와의 만남 주선

우리회는 특허청과 함께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사업 교육생들의 역량을 키우고 세계적인 CEO로서의 꿈을 확장하기 위한 지원책의 하나로 글로벌 경제위기 해법과 인재 육성의 방향을 제시한 '글로벌 인재 포럼 2012'의 정규세션을 진행하고, 글로벌 CEO와의 만남을 주선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6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경제신문이 공동 주최해온 글로벌 인재포럼이다. 세계적 저명인사를 연사로 초청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인재양성과 활용 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올해는 '교육이 최고의 복지다(Better Education, The Best Welfare)'라는 주제로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서울 명동에 위치한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우리회는 포럼 마지막 날인 10월 25일 '차세대영재CEO, 혁신(지식재산)으로 스티브잡스에 도전한다'라는 주제로 정규세션(14:00~15:30)을 진행했다. 이날 세션은 크레몬드 조지아대학 토렌스 영재창의성센터장의 '영재 · 창의성발현을 위한 지원방향', 이석우 카카오톡

구분	성명 및 소속
좌장	이우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주제 발표1	Bonnie Cramond 조지아대학 토렌스영재창의성센터장 주제: 영재 · 창의성발현을 위한 지원방향
주제 발표2	이석우 카카오톡 공동대표 주제: 새로운 도전, 준비된 기회
토론 (패널)	최성애 HD가족클리닉 소장
	김광수 포스텍 교수(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장)
	김현진 레인디 대표

우리회, '사랑의 PC전달식' 가져

우리회는 10월 15일 19층 회의실에서 소외 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와 교육사업 지원을 위한 '사랑의 PC 전달식'을 가졌다.

우리회는 업무용으로 사용해오다 노후된 컴퓨터 등 50대를 한국IT복지진흥원에 기증하고, 한국IT복지진흥원은 기증받은 PC를 재생해 소외계층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우리회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KIPA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첨단 IT 시대에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고자 마련한 것이다.

공동대표의 '새로운 도전, 준비된 기회' 발표 순서로 전개됐다. 주제 발표 후에는 패널로 참석한 최성애 HD가족클리닉 소장, 김광수 포스텍 교수, 김현진 레인디 대표가 이우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장의 진행에 따라 청중과의 토론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우리회는 이번 포럼에 참가한 50명의 교육원생에게 '글로벌 리더와 함께하는 오찬행사'를 주선해 글로벌 리더의 자세와 마인드를 직접 배울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제공했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된 우리나라 대표 특산품

Seosan
충청남도

서산마늘

1/ 유래

우리나라의 도입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단군신화에도 나올 뿐만 아니라 「삼국사기」의 기록으로 보아 재배역사가 매우 오래된 듯합니다. 서산 6쪽마늘은 삼국시대부터 재배되어 온 고유의 재래종으로 연산일기에서 품질의 우수성이 확인되었으며,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서산 간월도 앞바다의 서산 부석면 앞포구에서 영국 선적과 마늘 20근을 거래하였다는 기록으로 오랜재배 역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2/ 특성

서산지방은 흙이 깊고 물을 잘 빨아들이는 황토가 마늘 재배에 적합하여 충남 생산량의 약 20%정도(전국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지형 마늘이고 쪽수가 6~8쪽이며 각각의 쪽이 크고 크기가 일정합니다. 수염뿌리가 긴 특징이 있고 속껍질은 자주색으로 흰줄무늬가 많으며, 쪽이 단단해서 저장성이 우수합니다. 또한 다른 마늘 품종에 비해 마늘의 독특한 맛과 향기를 내는 알리신 함량이 높습니다.

| 상표명 |
서산마늘

| 권리자 |
서산마늘생산자단체협의회 영농조합법인

| 등록번호 |
제20호

| 상품분류 |
제31류 마늘(신선한 것)

연락처
서산시 농정과
041-660-2636

Jeungpyeong
충청북도

증평인삼

증평인삼은 충북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인삼과 가공한 인삼을 판매하고 있으며 개발에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명품 인삼입니다.

증평인삼

| 상표명 |
증평인삼

| 권리자 |
증평인삼연구회 영농조합법인

| 등록번호 |
제37호

| 상품분류 |
제29류 가공된 인삼, 냉동인삼,
제31류 인삼(신선한 것)

연락처
증평인삼연구회 영농조합법인
043-838-1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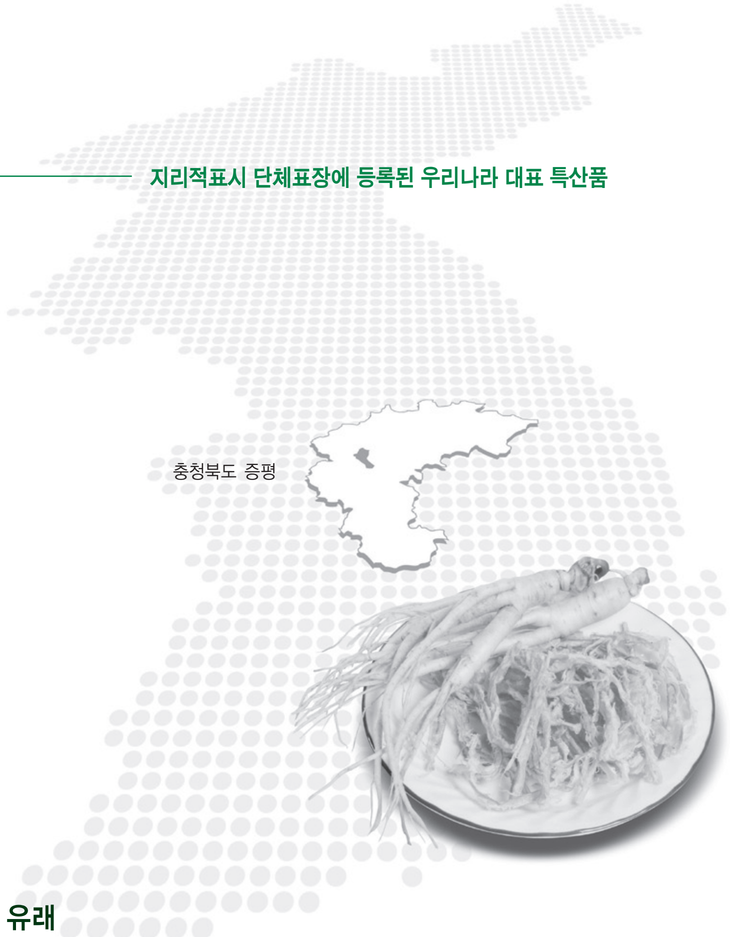

1/ 유래

증평은 증천의 "증"자와 장평의 "평"자를 따서 "증평"이라 하였는데, 조선시대 괴산군에 속한 지역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토산품으로 증재되어 있어 그 재배역사를 증명할 수 있고 세종신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임원십육지에도 주요약재생산지로 등재되어 증평이 속한 충청지역은 인삼이 토산품으로 보편적으로 재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특성

증평 지역의 기후특성은 중부내륙형 기후로서 여름에는 고온다습하고 겨울에는 한랭 건조하며 일일 중에 비교적 큰 기온 차로 인삼 재배의 최적 기후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다른 지역의 인삼 산지와는 달리 중산간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차별성이 있도, 품질 개선을 위한 생산자와 기관의 협조, 신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 품질 개선, 시설투자 등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증평인삼의 고품질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몰래 발명이야기_라식수술

글·그림 김민재

시대의 힘이라고 할까? 문명의 힘이라고 할까? 사람들의 이상과 꿈은 어느 시점에서 현실이 된다.
간단한 수술로 정상인의 시력을 갖을 수 있습니다
오 ~ 서프라이즈 ~!!
아~ 나도 빨리 해야지~
일명 '라식(LASIK)'이라고 불리우는 이 기적의 시술은 1950년대 스페인의 한 안과의사에 의해 시작되었고 러시아의 안과의사가 한 소년의 눈을 수술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하였다.
이런! 눈에 유리가 박히다니?! 각막 가장자리를 살짝 절개 해야겠군.
...
그러나 이게 왠일?! 각막이 회복되자 소년의 시력이 회복되었다!
오~마이 갓!!
뚜뚜뚜뚜
이후 1968년 엑시머 레이저의 개발과 1990년 보다 기술적인 완성으로 합병증이 적은 수술이 이루어 지면서 라식 수술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하였다
휙~
안경은 이젠 안녕~!
시대에 따라 신기술의 등장은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과거의 전유물로 만들지도 모르겠다.
저게 안경이라는 거야!
아~! 옛날책에서 봤어

오래 살려면 뇌도 단련시켜야 한다

우울증이나 치매, 게임 중독, ADHD에 이르기까지 뇌와 연관된 질병들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뇌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포탈사이트에 '뇌'라는 단어만 쳐도 수많은 책과 기사들이 검색된다. 매일 기억하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감정을 표현하면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뇌, 하지만 그런 뇌가 노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몇이나 있을까? 몇 년 전 일을 어제 일처럼 세세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제 일인데 희미하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다. 몸도 잘 단련시키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듯 뇌 역시 마찬가지다.

뇌 건강을 지키고 뇌의 노화를 늦추려면 지금부터라도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고 뇌를 단련시켜야 한다.

김소형
한의학 박사

뇌도 관리가 필요하다

사람의 뇌는 단단한 뼈에 둘러싸여 있다. 외부 충격으로부터 중요한 뇌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사람의 뇌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태어나며, '소우주'라고 불릴 정도로 복잡하고 다양

한 기능을 하게 된다. 정신은 물론이고 신체 기능을 총괄하면서 인체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뇌의 신경세포는 나이가 들면 보통 하루에 10만개 가량 줄어든다. 뇌 세포 내에 있는 항산화물질이 감소하면서 세포 내 독소가 늘어나고 결국 뇌신경이 죽어가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생활하는데 큰 불편을 느끼거나 이상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으로 뇌의 노화가 진행된다면 큰 어려움 없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면서 노년기가 길어졌다. 그 길어진 시간만큼 뇌를 더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려 한참을 찾아 헤매고 어제 한 일도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해서야 뇌 건강에 관심을 가지면 늦다. 신체를 단련시키듯 뇌 역시 적절한 운동과 사용으로 단련시켜서 오랫동안 뇌 기능을 활발히 쓸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나이가 들어 뇌가 노화되는 것을 전부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생활습관과 환경에 따라 노화의 속도가 달라지는 만큼 적절한 관리로 얼마든지 뇌의 젊음과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

쓸수록 발달하는 뇌

뇌 건강을 지키려면 우선 뇌를 잘 써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좌뇌와 우뇌를 균형 있게 써주어야 한다. 현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쪽은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좌뇌인데 최근 감성지능, 창의력, 우뇌형 인간 같은 말들의 유행과 함께 소홀했던 우뇌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평소 학업이나 일에만 파묻혀 지낸다면 지나치게 불균형하게 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뇌 건강을 위해서라면 좌뇌를 쓰는 만큼 우뇌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잠시 시간을 내서 좋은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좋고 그림을 보고 음악을 듣고 기분 좋은 생각과 상상을 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진다면 이 역시 건강한 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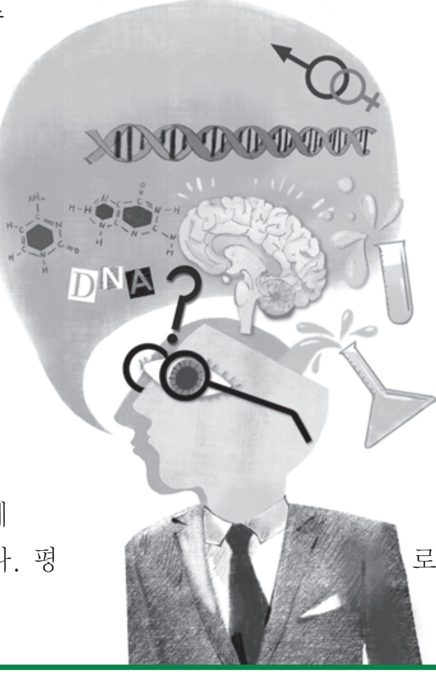

신체의 근육은 쓰면 쓸수록 발달하듯 뇌도 마찬가지다. 쓰지 않으면 뇌 기능 발달이 저하되는 만큼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뇌를 자주 써주는 것이 중요하다. 치매 예방을 위해 뇌세포를 자극할 수 있는 게임을 많이 활용하는데, 단순히 뇌를 자극하는 게임이 아니라 지적인 게임을 통해 게임 규칙을 이해하고 게임을 실행하면서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를 적절히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치매 예방이 아니더라도 평소 뇌 건강에 관심이 많다면 바둑이나 장기, 단어나 숫자를 활용하는 게임 등 지적인 활동이 가능한 게임으로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것이 좋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는 광고 카피가 한때 직장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적이 있는데, 열심히 일을 했다면 당연히 휴일과 휴가를 즐길 권리도 있다.

뇌 역시 잘 사용하고 훈련시켰다면 푹 쉬어줄 필요도 있다.

뇌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발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운동을 지나치게 하면 오히려 피로가 가중될 수 있듯이 뇌 역시 무리하게 사용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피로해진다. 그래서 잘 쓰는 것만큼 잘 쉬게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일이나 스트레스로 뇌를 혹사시켰다면 한 번씩은 뇌를 완전히 쉬게 해주는 것도 현명한 일이다. 그저 일이나 학업에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텅 비운다는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얼마간 유지하며 뇌의 긴장을 풀고 쉬어야 한다.

또한 충분한 수면도 뇌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 숙면을 취하게 되면 다음 날 두뇌 컨디션도 좋아진다. 불필요한 감정과 기분도 빨리 털어버리자. 뇌는 매일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기억하고 저장하느라 지쳐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집착과 불안, 걱정과 스트레스는 오래 끌지 않는 것이 좋다.

뇌 건강을 돕는 음식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안토시아닌이 있다. 검은콩, 검은깨, 검은 쌀 등 블랙푸드에 많이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노화방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젊고 건강한 뇌를 만든다.

이 외에도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나 포도 같은 보라색 과일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평상시 신경을 써서 챙겨 먹는다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

호두, 잣, 땅콩 등의 견과류는 두뇌 발달에 도움을 줘 수험생들에게 좋은 대표적인 식품이기도 한데, 노화 예방에도 좋다. 요리에 활용하거나 간식으로 적당량을 먹어주면 도움이 된다. 진한 녹색 잎과 비타민 A, C, E, 셀레니움 등에도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 있으며 해산물이나 소의 간에 들어 있는 글루타치온도 세포의 산화를 방지하고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오메가3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 연어, 참치, 호두, 호박씨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이다.

미네랄 역시 뇌 건강에 꼭 필요한 미량영양소인데, 현대인들은 가공 식품의 과다 섭취와 불균형한 식습관 등으로 미네랄의 자연 섭취가 어렵기 때문에 따로 챙겨 먹는 것이 좋다.

뇌 건강을 위해 몸도 함께 움직여주면 도움이 된다.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와 같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준다면 신체에 활력을 되찾는 만큼 뇌 건강 역시 좋아지게 된다. 2012. 11

뮤지컬〈어쌔신〉

링컨, 케네디, 루즈벨트, 맥킨리, 레이건, 가필드, 포드…
실화를 바탕으로 한 미국 대통령 암살자들의 이야기!

축제의 한 사격장

사격장 주인의 룰렛에 의해 대통령을 쏠 기회가 주어진다.
저마다의 이유로 대통령을 암살하고픈 사람들이 모인다.

아무도 출판해 주지 않는 자신의 책을 홍보하기 위해, 자신을 무시하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사랑하는 애인의 말에 사람들이 귀 기울이게 하기 위해, 직장에서 해고된 분풀이로, 영화배우 '조지 포스터'의 전화 한통을 받기 위해 총을 든다.

…그리고 대통령을 쏜다

브로드웨이의 거장 '스티븐 손드하임'의 최고의 명작!
뮤지컬〈어쌔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작곡가 '스티븐 손드하임'의 뮤지컬
언론과 관객의 찬사가 끊이지 않는 브로드웨이 최고의 수작.
2012년 11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명작을 만난다.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파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민국 최고의 연기파 국민배우 황정민, '빨래' 이정은, 남문철, '캣츠' 이상준, '뛰어난 가창력의 소유자' 최성원, '두 도시 이야기' 정상훈, 박성환, '맨 오브 라만차' 박인배, '스프링어웨이크닝' 윤석원, '화려한 휴가' 이승근, '진정성 있는 배우' 박영주, '넥스트 투 노멀' 최재림, '블랙 메리 포핀스' 강하늘, '떠오르는 샛별' 유인혁, '메노포스' 김현진, '환상의 커플' 김민주, '피터팬' 김태민, '엘리자벳' 탕준상까지…

뮤지컬〈어쌔신〉을 손꼽아 기다리는 당신의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공연장소
_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공연기간
_ 2012. 11. 20 ~ 2013. 2. 3

관람시간
_ 120분

월간 「발명특허」
광고게재 안내

한국발명진흥회가 발간하는 월간 「발명특허」는 발명진흥사업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동향 및 정보를 다루는 정보지로 본사 회원사 및 국내외 유관기관, 기업, 도서관, 학교, 발명가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귀사의 홍보를 위한 광고 게재를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광고가격(1개월 기준)

광고게재면	규 격	가 격	비 고
표지 4	칼라 전면	900,000	부가세 별도
표지 3	〃	700,000	
표지 2	〃	700,000	
내지 화보	〃	500,000	
내지 흑백	흑백 전면	300,000	

원고모집안내

월간 「발명특허」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야별 전문 의견과 논문, 정책 · 출원 동향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널리 확산 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간되는 전문지입니다. 「발명특허」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정보를 선도하고 정책 · 기술 전문지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모집분야** : 지식재산권 관련 칼럼, 논평, 판례해석 등
- **원고제목** : 관련 분야별로 자유롭게 선택
- **원고분량** : 제한없음
- **모집시기** : 수시
- **보내실곳(E-mail)** : smp@kipa.org

회원 동정 접수

2009년 9월부터 **【회원동정】** 코너를 개설했습니다.
「회원동향」란에 게재할 수 있는 회원사의 동정과 보도자료를 매월 15일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분량** : A4(1/2매, 글자크기 : 12포인트),
  관련 사진자료 1매 함께 제출 (보도자료 형태도 무관함)
- **보내실곳** : smp@kipa.org

기획 · 편집 : 기획팀 박선민 주임 (Tel. 02-3459-2727, Fax. 02-3459-2729)

우리회 지회 안내

지 회	지회장	사무국장	주 소	연 락 처
부산지회	박성용	김유헌	부산시 남구 문현3동 243번지	051-645-9683
광주지회	고정주	김 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1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062-954-3841
강원지회	김윤호	김현웅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198-25	033-258-6580
전북지부	-	정승원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515-1	063-471-1284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기업과 종업원의 win-win,

직무발명제도

기업의 미래를 바꿉니다.

▶ 직무발명제도란?

○ 종업원(발명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기업이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 기업은 직무발명제도를 왜 도입해야하나요?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종업원에게 기술개발 의욕을 유발하고, 기업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와 기술 축적 및 이윤창출로 인해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 직무발명제도는 어떻게 도입하나요?

○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내용을 기업과 종업원이 합의하여 기업의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정하면 됩니다.

▶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이, 근로자는 비과세 혜택이 있고,
○ 정부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직무발명 도입기업에 대하여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 특허청은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찾아가는 직무발명제도 교육」을 무료로 개최하고 있으니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발명제도 열람**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의 특허마당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의 사업안내

■ **직무발명제도 관련 문의**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042-481-5373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45

제 5 회
지식재산능력시험

21세기는 지식재산시대!
IPAT으로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세요.

IPAT 실시요강

지식재산능력시험이란?

발명진흥법상 법인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관하는 국내 유일한 지식재산능력 공인시험으로 지식재산의 기본지식과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시험

- **시 험 대 상** 지식재산에 관심있는 자
- **시 험 장 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주요도시
- **접 수 기 간** 2012.10.15 ~ 2012.11.08
- **제 5 회 시 험** 2012.11.24 (토)
- **성 적 발 표** 2012.12.07 (금)
- **응 시 료** 20,000원 (개인)
- **단체응시혜택** 응시료 할인, 온라인 강좌 할인, 설명회 등 다양한 혜택 지원
- **접 수 방 법** 접수기간 내에 www.ipat.or.kr 에서 온라인 접수
- **표 준 교 재** 지식재산의 정석(출판사 : 박문각) 서점에서 판매중
- **문 의** 02)3459-2818, 2777

자세한 사항은 www.ipat.or.kr 에서 확인

제5회시험
11월24일

IPaT

한국발명진흥회